

2019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안전보건 세미나

환경미화원 건강권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세미나

- ◇ 일 시 : 2019년 7월 4일 (목), 오전 10시~12시
- ◇ 장 소 :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01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Federation of Korean United Worker's Unions

세미나 프로그램 진행안내

세미나명	일시/장소	세부내용			비고
		시 간	주 제	발표자	
환경미화원 건강권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 을 위한 세미나	'19.7.4(목) 10:00~12:00 컨퍼런스센터 301호	09:30~10:00 (30분)	등 록	-	좌장:정재희 (안실련 공동대표)
		10:00~10:10 (10분)	인사말씀	황준영 의장 연합노련 환경분과위원회	
		10:10~10:40 (30분)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작업 실태 및 산업재해 감소 방안	최서연 교수 한서대 보건학부	
		10:40~11:30 (50분)	지정토론	강석화 위원장 대전도시공사환경노조 장경술 의장 인천지역환경분과협의회 김남진 사무관 고용노동부 김지수 사무관 환경부 배치우 본부장 대한산업안전협회	
		11:30~12:00 (30분)	질의 · 응답 및 종합정리	-	

목 차

■ 〈발제자료〉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작업 실태와 산업재해 감소 방안 7

- 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최서연 교수

■ 〈참고자료〉 37

■ 노동N이슈+제20호 77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작업 실태와 산업재해 감소 방안

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최서연 교수

1. 들어가며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일대 공동주택에서 페비닐, 페트병, 스티로폼 등의 폐기물 수거 거부로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경험한 바 있으며, 불법수출 쓰레기의 문제점이 보도되면서 폐기물관리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195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분하던 분리체계는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기 시작하였고, 생활폐기물 관리는 대부분 환경미화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발표하였고, 환경미화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나 환경미화원의 산재 감소를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이해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과 작업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사실로 인력 중심의 고유한 업무 특성과 작업 장소 대부분이 이동 범위가 넓고, 외부 작업이 많은 작업 환경이 그 중심에 있다. 또한 차량을 이용한 도보 이동, 중량물 취급, 근로자의 고령화, 영세 소규모 형태로 운영되어 있는 위탁 사업장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며, 이면의 고용형태에 따른(직영·공영(이하, 직영), 민간위탁(이하, 위탁)) 업무, 작업환경, 근로조건에 의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이 산재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국의 환경미화원은 43,390명(2018년 5월 기준, 직영 18,992명, 위탁 24,398명)으로 가로청소를 제외한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 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은 민간위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3년간(2015-2017) 환경미화원의 재해자는 1,822명으로 재해자는 직영 824명, 위탁 998명, 사고사망자는 직영 2명, 위탁 16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며(환경부, 2019), 폐기물 수거차량과 관련된 교통사고, 발판에서의 떨어짐을 포함하여 작업 중 넘어짐, 끼임, 절단, 베임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최은철, 2014).

업무 관련 유해요인은 생활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작업 시 쓰레기 잔해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진(석면, 페인트 잔해 등), 폐기물에 잔존해 있는 위험물질(중금속 등), 청소차량 및 거리차량에서 발생하는 연소 물질 등의 화학적 요인, 쓰레기 부패 시 발생하는 공기 중 부유 미생물, 업무 및 처리 과정에서의 미생물과의 접촉, 동물 등의 배설물 및 잔해물(사체 등) 등의 생물학적 요인, 작업 자세, 중량물 등의 인간공학적 요인, 추운 환경, 소음, 전진진동(차량 운전 등) 등의 물리적 요인, 불규칙한 식사시간, 심야 노동, 고용불안, 과도한 노동 강도 등의 조직적 요인이 업무 관련 요인으로 제시되며,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전염성질환, 근골격계질환, 소화기질환, 스트레스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신범 등, 2010).

이에 환경미화원의 작업실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현실적으로 산업재해를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생활폐기물처리업체

2.1 생활폐기물 업체 현황

- 폐기물 처리업체는 총 12,385개소(2016년)로 이 중 수집·운반업체가 6,264개소(50.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한국폐기물협회).
- 폐기물 처리업체 중 생활폐기물 전문 업체는 (그림 1)과 같이 전국 1096개소이며, 516개소의 업체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중복하여 운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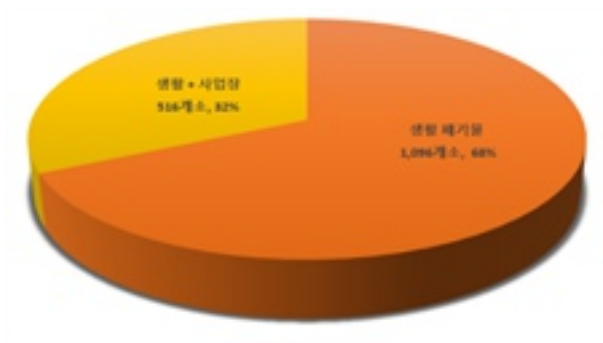


그림 1.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 생활폐기물 전문 업체는 (그림 2)와 같이 경기도, 경상북도, 서울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사업장 폐기물 업체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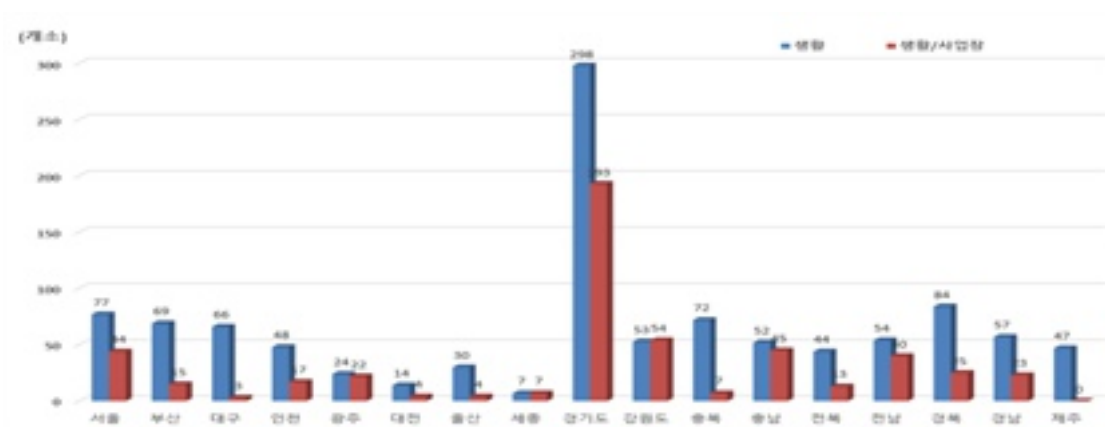


그림 2. 전국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분포

- 총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 현황은(2016년도 기준) <표 1>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9.5%, 처리업체 81.3%, 자가 처리 9.2%로 처리업체 관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계폐기물의 처리는 자치단체 62.6%, 처리업체 37.1%, 자가 처리 0.3%로 자치단체 관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폐기물 총 발생량은 경기, 충남, 서울 순으로 많았으며, 이들 3개 시·도가 전체 발생량의 41.9%를 차지하며, 생활계폐기물 1일 발생량은 53,772톤의 46.5%(25,030톤)가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경기, 부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폐기물처리주체별 처리 현황

(단위: 톤/일)

구 분		계	비율(%)	매 립	소 각	재활용	해역배출
총 폐기물	계	415,345	100.0	35,032	24,135	356,086	92
	자치단체	39,278	9.5	11,684	12,822	14,772	0
	처리업체	337,881	81.3	16,521	8,119	313,149	92
	자가 처리	38,186	9.2	6,827	3,194	28,165	0
생활계 폐기물	계	53,772	100.0	7,909	13,610	32,253	0
	자치단체	33,643	62.6	7,080	12,410	14,153	0
	처리업체	19,946	37.1	829	1,181	17,936	0
	자가 처리	183	0.3	0	19	164	0

- 지역별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그림 3)과 같이 발생량이 가장 적은 지자체는 세종시로 1인당 1일 평균 0.72kg이고, 발생량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제주도로 평균 1.97kg로 제주도는 방문 관광객의 영향으로 타 지자체 대비 1인당 1일 폐기물발생량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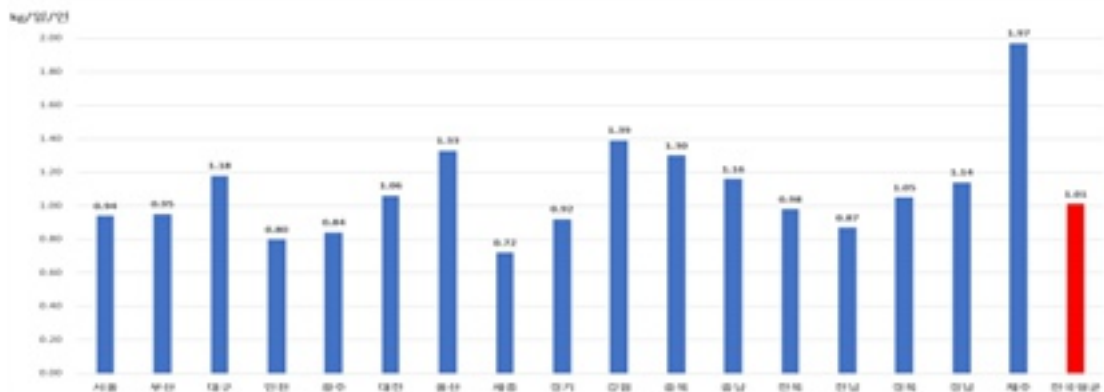


그림 3. 지역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3. 환경미화원 인력 현황(2016년 기준)

- 환경미화원은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단순노무종사자 대분류에 포함되며, 거리 및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청결하게 유지하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함.

- 201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환경미화원 인력은 <표 2>와 같이 전체 33,950명으로 지자체 소속 19,089명, 대행업체 소속 14,861명으로 지역별로는 (그림 4)와 같이 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순으로 환경미화원이 많았고,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지자체 소속에 비하여 위탁업체 소속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

표 2.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관련 환경미화원 현황

(단위: 명, 2016년 기준)

구분	계	지자체 소속	대행업체 소속	지자체 소속율(%)	대행업체 소속율(%)
계	33,950	19,089	14,861	56.2	43.8
서울특별시	4,806	2,466	2,340	51.3	48.7
부산광역시	2,984	1,086	1,898	36.4	63.6
대구광역시	1,307	1,011	296	77.4	22.6
인천광역시	1,081	421	660	38.9	61.1
광주광역시	734	429	305	58.4	41.6
대전광역시	838	462	376	55.1	44.9
울산광역시	636	246	390	38.7	61.3
세종특별자치시	136	80	56	58.8	41.2
경기도	7,886	3,987	3,899	50.6	49.4
강원도	1,775	1,283	492	72.3	27.7
충청북도	1,335	757	578	56.7	43.3
충청남도	1,610	1,099	511	68.3	31.7
전라북도	1,881	1,064	817	56.6	43.4
전라남도	1,800	1,308	492	72.7	27.3
경상북도	2,348	1,742	606	74.2	25.8
경상남도	2,378	1,233	1,145	51.9	48.1
제주특별자치도	415	415	0	10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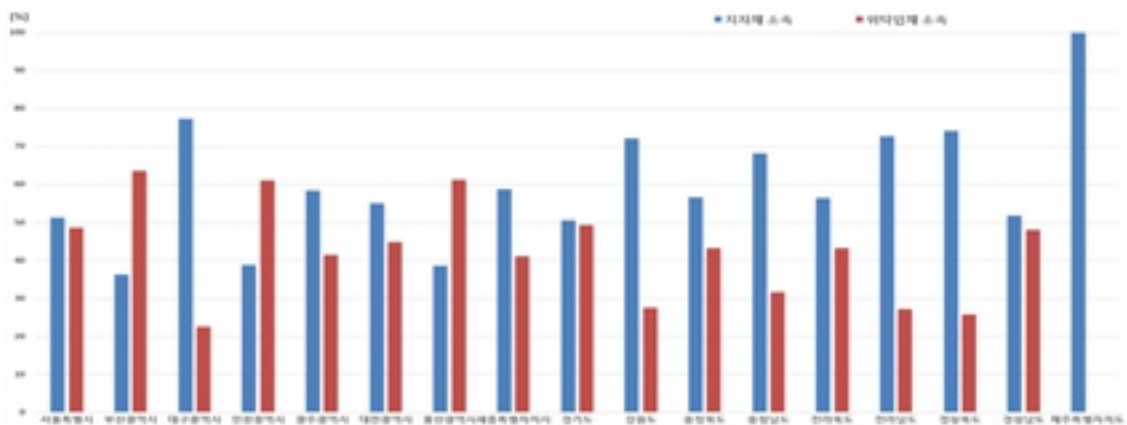


그림 4. 지역별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관련 환경미화원 현황

4. 수거 특성

- 대부분 집 앞에서 수거하는 문전수거 방식이 가장 많으며, 일부 빌라, 주택 등의 밀집 지역의 경우 생활쓰레기는 수레를 이용하여 이동 후 차량 수거, 음식물 폐기물의 경우 20L 가정용 쓰레기통을 수거하여 120L에 옮긴 후 수거하며, 상가 밀집지역, 아파트의 경우 거점수거방식으로 수집 운반 작업 수행
-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은 같이 5-100L 규격의 ‘생활 폐기물 봉투(종량제 봉투)’를 1-4개씩 들어 수거 차량에 투입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주택 및 상가 그리고 아파트 등의 지역에 따라 봉투를 취급하는 방식은 동일하나 주택 및 아파트 지역의 경우 큰 규격(50-100L)의 봉투 취급이 대체로 적은 반면, 상가 지역의 경우 봉투의 규격이 대체로 큰 규격(50-100L)의 봉투 취급이 많은 특성을 보임.

표 3. 생활폐기물 근로자 작업특성

구분		특성
밀집 지역	주택지역	- 협소한 골목 또는 경사로가 많은 구역 - ‘음식물 폐기물 봉투’를 일반적으로 사용
	상가지역	- ‘음식물 폐기물 봉투’, ‘음식물 폐기물 (플라스틱)통’을 사용 - 아파트는 단지 내 위치하고 있는 ‘대형 음식물 폐기물 통’을 이용
수거 용기	음식물	- 개당 2-10L 단위의 봉투를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폐기물 봉투 취급	3-4개씩 한 번에 들어 음식물 압착 차량에 투입하는 방식
	쓰레기통 취급	- 개당 2-25L 단위의 가정용 통에 담긴 폐기물을 대형통(80-120L)에 부어 이를 음식물 자동 수거차량 고리에 걸어 리프트를 통해 수거 - 중형통(40-60L)의 경우 수거차량 고리와 중형통의 규격이 맞지 않아, 인력으로 들어 올려 고리에 걸은 후 리프트를 통해 수거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

표 4. 작업 특성별 폐기물 취급량

직군 구분	취급물 평균개수(개/일)	평균중량 (범위: kg)	1인당 평균취급량(kg)
음식물 폐기물 수거 작업	466.2	7.8(0.8-54.5)	3,636.4
생활 폐기물 수거 작업	1037.7	6.2(0.4-29.8)	6,433.7

표 5. 요일별 생활폐기물 수거량

요일 구분		취급물 평균개수 (개/일)	평균중량 (범위: kg)	1인당 평균 취급량 (kg)	평일대비 취급율 (%)
음식물 폐기물 수거 작업	평일	371	12.2(1.3-54.5)	4526.2	100.0%
	월요일	608	11.3(1.3-54.5)	6870.4	151.8%
생활 폐기물 수거 작업	평일	1438	5.4(0.8-29.5)	7765.2	100.0%
	월요일	1581	5.5(0.8-29.5)	8695.5	112.0%

5. 환경미화원의 수집·운반 작업 실태

- 2018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용역에 의한 전국의 환경미화원 680명 대상 수집·운반 작업 관련 실태 조사 실시

5.1 작업공정의 이해

- 환경미화원의 작업 공정은 사업장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작업환경을 이해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과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데 매우 중요함.
- 일반적인 작업공정은 사무실(임시사무실)의 출근 확인 후 → 각자 업무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 장소 이동(1조, 2~4인, 차량 운전자 포함)→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작업 실시 → 적환장 수집 → 소각장, 매립지 이동 → 사무실(임시사무실) 복귀 확인 → 퇴근
- 작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작업환경, 차량, 휴게시설 및 편의 시설 이용 등이 있음

표 6. 작업공정 예

차고지(출·퇴근 확인을 위한 임시 사무실)에 종사자가 출근

- 각자 업무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 장소 이동
-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작업 실시
- 적환장 수집
- 소각장, 매립지 이동(차량 운전자 1인 이동)

차고지(출·퇴근 확인을 위한 임시 사무실)에 운전자만 출근

- 차량 이동
- 상차원 대기 후 탑승(일반 도로, 상가 앞 등에서 차량 대기 후 탑승)
- 업무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 장소 이동
-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작업 실시
- 적환장 수집(소각장, 매립지 이동은 전용 업무 차량이 적환장 수거 후 이동)

차고지(출·퇴근 확인을 위한 임시 사무실)에 운전자만 출근

→ 차량 이동

→ 상차원 대기 후 탑승(일반 도로, 상가 앞 등에서 차량 대기 후 탑승)

→ 업무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 장소 이동

→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작업 실시

→ 소각장, 매립지 이동(차량 운전자 1인 이동)

5.2 환경미화원의 수집·운반 작업 실태

- 전체 대상자의 근속년수는 5년 미만과 5-10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직영의 경우 5-10년 미만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위탁은 5년 미만 33.6%, 5-10년 미만 32.0%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임.

표 7. 사업장 운영 구분(직영, 위탁)에 따른 근로자의 근속년수 차이

구분		사업장 운영 구분		전체
		직영	위탁	
5년 미만	n	59	143	202
	%	23.7	33.6	30.0
5-10년 미만	n	77	136	213
	%	30.9	32.0	31.6
10-15년 미만	n	68	49	117
	%	27.3	11.5	17.4
15-20년 미만	n	21	77	98
	%	8.4	18.1	14.5
20년 이상	n	24	20	44
	%	9.6	4.7	6.5
전체	n	249	425	674
	%	100.0	100.0	100.0

- 직영과 위탁의 임금 차이는 통상임금(월)의 경우 직영 3,614,285.71원, 위탁 2,147,368.42원, 실 수령액(월)의 경우 직영 3,394,736.84원, 위탁 2,750,000.00원으로 위탁에 비하여 직영이 높게 나타남.
- 직영과 위탁의 차이는 통상임금(월) 1,466,917.29원, 실 수령액(월) 644,736.84원으로 통상임금에 비하여 실 수령액의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추가근무 등의 수당에 의한 것으로 파악됨.

표 8. 사업장 운영 구분(직영, 위탁)에 따른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 차이

구분	근무형태	평균±표준편차
통상임금(월)	직영	3,394,736.84±304546.45
	위탁	2,147,368.42±627,489.20
실 수령액(월)	직영	3,614,285.71±811,230.69
	위탁	2,750,000.00±612,587.27

- (그림 5)와 같이 개인적인 출근 시간은 03:00~06:00미만이 50.9%로 공식적인 출근 시간 30분~1시간 전 출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6)과 같이 개인적인 퇴근시간은 15:00~18:00미만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조기 출근과 추가근무로 인하여 공식적 퇴근 시간과 개인적 퇴근 시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5. 사업장 운영 구분(직영, 위탁)에 따른 공식적·개인적 출근 시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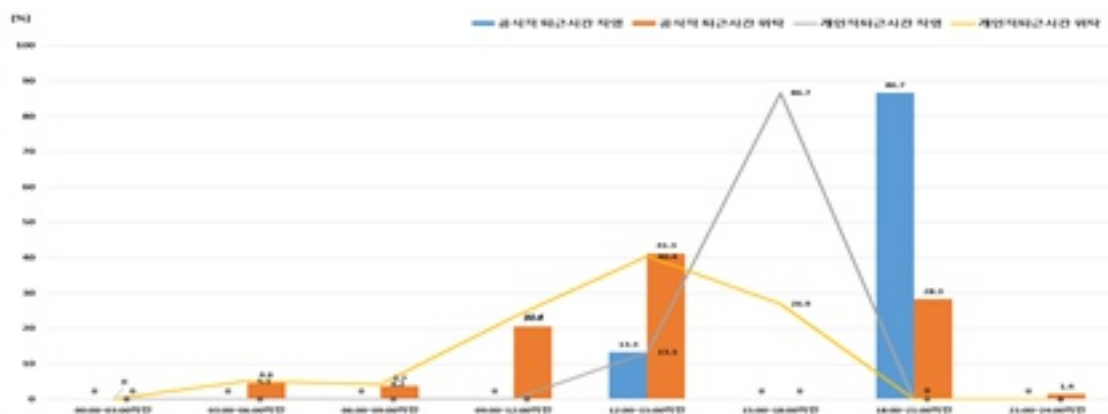


그림 6. 사업장 운영 구분(직영, 위탁)에 따른 공식적·개인적 퇴근 시간 분포

- 전체 대상자의 1일 근무시간은 8시간 56.5%, 8.5시간 5.0%, 9시간 17.2%, 10시간 20.9%, 12시간 0.4%로 8시간 초과 근무자가 43.5%로 나타남.
- 직영은 10시간 근무자가 39.8%로 높게 나타났으며, 위탁은 9시간 25.8%, 10시간 10.0%로 나타나 직영과 위탁 모두 장시간 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요구됨

표 9. 사업장 운영 구분(직영, 위탁)에 따른 근로자의 1일 근무시간 차이

구분		사업장 운영 구분		전체
		직영	위탁	
8.0 시간/1일	n	141	243	384
	%	56.6	56.4	56.5
8.5 시간/1일	n	0	34	34
	%	.0	7.9	5.0
9.0 시간/1일	n	6	111	117
	%	2.4	25.8	17.2
10.0 시간/1일	n	99	43	142
	%	39.8	10.0	20.9
12.0 시간/1일	n	3	0	3
	%	1.2	.0	.4
전체	n	249	431	680
	%	100.0	100.0	100.0

- <표 11>과 같이 1일 평균 수집·운반 관련 작업 시간은 6.0 시간미만 9.9%, 6.0-8.0 시간미만 32.1%, 8.0 시간 48.5%, 8.0 시간 초과 9.6%로 나타나 8.0시간 과 6.0-8.0 시간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직영은 8.0시간미만 작업이 50.5%, 위탁은 36.9%로 나타났으며, 8.0시간 초과

작업의 경우 직영은 나타나지 않았고 위탁은 15.1%로 나타나 직영과 위탁의 업무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11. 사업장 운영 구분(직영, 위탁)에 따른 근로자의 1일 작업시간 차이

구분		사업장 운영 구분		전체
		직영	위탁	
6.0 시간미만 /1일	n	57	10	67
	%	22.8	2.3	9.9
6.0-8.0 시간미만/1일	n	69	149	218
	%	27.7	34.6	32.1
8.0 시간/1일	n	123	207	330
	%	49.4	48.0	48.5
8.0 시간 초과/1일	n	0	65	65
	%	0	15.1	9.6
전체	n	249	431	680
	%	100.0	100.0	100.0

- <표 12>와 같이 작업 업무 시 구성 인원은 3인 1조(운전원 1명, 수거원 2명) 71.3%, 2인 1조(운전원 1명, 수거원 1명) 20.7%, 단독(운전, 수거 병행) 7.9%로 나타났음
- 직영에 비하여 위탁의 경우 작업 업무 구성 인원은 3인 1조, 2인 1조 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독(운전, 수거 병행) 구성은 직영에서만 나타남.
- <표 13>과 같이 연구 대상자가 수집·운반 관련 작업 시 전담인원은 3명이 61.2%로 가장 많았고, 2명은 26.9%로 나타남.
- 직영은 운전, 수거 병행 업무의 단독 작업 근로자의 작업으로 인하여 전담 인원 특성으로 수집·운반 관련 작업의 전담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표 12. 사업장 운영 구분(직영, 위탁)에 따른 작업 조 구성 차이

구분		사업장 운영 구분		전체
		직영	위탁	
3인 1조 (운전원 1명, 수거원 2명)	n	153	332	485
	%	61.4	77.0	71.3
2인 1조 (운전원 1명, 수거원 1명)	n	42	99	141
	%	16.9	23.0	20.7
단독(운전, 수거 병행)	n	54	0	54
	%	21.7	.0	7.9
전체	n	249	431	680
	%	100.0	100.0	100.0

표 13. 사업장 운영 구분(직영, 위탁)에 따른 수집·운반 전담 근로자 차이

구분		사업장 운영 구분		전체
		직영	위탁	
1명	n	0	27	27
	%	.0	6.3	4.0
2명	n	36	147	183
	%	14.4	34.1	26.9
3명	n	159	257	416
	%	63.9	59.6	61.2
단독 병행 업무	n	54	0	54
	%	21.7	.0	7.9
전체	n	249	431	680
	%	100.0	100.0	100.0

- <표 14>와 같이 1주 기준 추가 근무는 없음 13.5%, 1-2회 61.6%, 3-4회 0.9%, 5회 이상 23.9%로 1-2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영은 1-2회가 84.3%, 5회 이상이 7.2%로 나타났으나 위탁은 1-2회 48.5%, 5회 이상 33.7%로 직영에 비하여 위탁의 추가 근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표 15>와 같이 추가근무 시 수당은 83.1%가 지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영 15.7%, 위탁 17.6%가 추가 수당이 미지급으로 나타남.

표 14. 사업장 운영 구분(직영, 위탁)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근무 차이

구분		사업장 운영 구분		전체
		직영	위탁	
없음	n	21	71	92
	%	8.4	16.5	13.5
1-2회 / 1주	n	210	209	419
	%	84.3	48.5	61.6
3-4회 / 1주	n	0	6	6
	%	0	1.4	0.9
5회 이상 / 1주	n	18	145	163
	%	7.2	33.7	23.9
전체	n	249	431	680
	%	100.0	100.0	100.0

표 15. 사업장 운영 구분(직영, 위탁)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근무 수당 지급 차이

구분		사업장 운영 구분		전체
		직영	위탁	
예	n	210	355	565
	%	84.3	82.4	83.1
아니오	n	39	76	115
	%	15.7	17.6	16.9
전체	n	249	431	680
	%	100.0	100.0	100.0

- 운영기관별 근무 만족도는 급여(보수), 작업환경(위생), 작업환경(안전), 근무시간(주/야간), 노동강도, 전반적 만족도의 모든 문항에서 직영이 위탁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 5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로 전체적으로 근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됨.
- 특히, (그림 7)과 같이 급여(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직영 3.09 ± 0.76 점, 위탁 2.54 ± 0.77 점으로 다른 만족도 문항에 비하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강도에 대한 차이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동강도의 경우 통계적인 의미는 나타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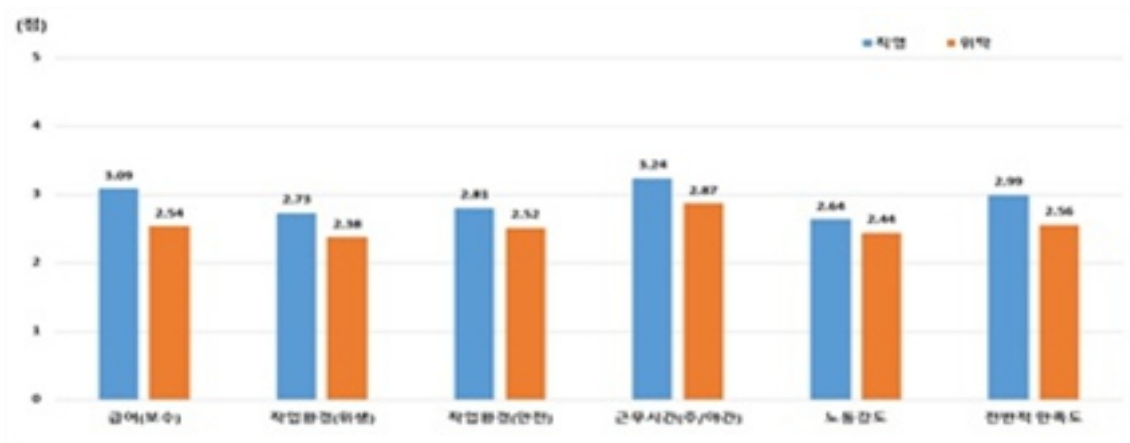


그림 7. 사업장 운영 구분(직영, 위탁)에 따른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 차이 비교

5.3 환경미화원의 업무 관련 사고 실태

- 지난 1년간 업무 중 다치거나 사고 경험은 전체 27.2%로 직영 32.5%, 위탁 24.1%로 나타났으며, 업무 중 다치거나 사고로 인한 병원 방문은 전체 25.1%로 직영 30.1%, 위탁 22.3%로 나타나 위탁에 비하여 직영의 병원 방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16. 사업장 운영 구분(직영, 위탁)에 따른 근로자의 사고 경험 차이

구분		사업장 운영 구분		전체
		직영	위탁	
미경험	n	168	327	495
	%	67.5	75.9	72.8
경험	n	81	104	185
	%	32.5	24.1	27.2
전체	n	249	431	680
	%	100.0	100.0	100.0

표 17. 사업장 운영 구분(직영, 위탁)에 따른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병원 방문 차이

구분		사업장 운영 구분		전체
		직영	위탁	
없음	n	174	335	509
	%	69.9	77.7	74.9
병원 방문	n	75	96	171
	%	30.1	22.3	25.1
전체	n	249	431	680
	%	100.0	100.0	100.0

표 18. 사업장 운영 구분(직영, 위탁)에 따른 근로자의 결근 경험 차이

구분		사업장 운영 구분		전체
		직영	위탁	
없음	n	216	349	565
	%	86.7	81.0	83.1
결근	n	33	82	115
	%	13.3	19.0	16.9
전체	n	249	431	680
	%	100.0	100.0	100.0

- 미세먼지, 폭염, 폭우·폭설, 한파 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작업중지’ 지시를 받은 경험은 45.1%로 나타났으며, 직영 37.3%, 위탁 49.7%로 직영에 비하여 위탁의 작업중지 경험이 높게 나타남.

표 19. 사업장 운영 구분(직영, 위탁)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 경험 차이

구분		사업장 운영 구분		전체
		직영	위탁	
작업중지 경험	n	93	214	307
	%	37.3	49.7	45.1
작업중지 미경험	n	156	217	373
	%	62.7	50.3	54.9
전체	n	249	431	680
	%	100.0	100.0	100.0

- 작업중지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다중응답분석 결과 폭우, 폭성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폭염 32.8%, 한파 18.6%, 미세먼지경보 8.2% 순으로 나타나 실외 작업으로 인한 날씨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0. 사업장 운영 구분(직영, 위탁)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 필요 사항 차이

구분		사업장 운영 구분		전체
		직영	위탁	
미세먼지 경보	n	57	56	113
	%	10.7	6.6	8.2
폭염	n	174	278	452
	%	32.8	32.7	32.8
폭우, 폭설	n	186	362	548
	%	35.0	42.6	39.7
한파	n	114	143	257
	%	21.5	16.8	18.6
기타	n	0	10	10
	%	.0	1.2	0.7
전체	n	531	849	1380
	%	100	100	100

- 경험한 사고 유형에 대한 다중응답 분석 결과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찢림 49.2%, 무리한 힘 또는 동작에 의해 근육이나 뼈 등이 잘못됨 28.8%,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26.8%, 떨어짐(추락) 13.9%, 이상온도에 의한 건강장해(예, 일사병, 화상, 동상 등) 7.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영과 위탁 모두 유사하게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됨.
-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유형은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찢림 25.9%,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17.5%, 무리한 힘 또는 동작에 의해 근육이나 뼈 등이 잘못됨 15.0%, 떨어짐(추락) 13.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영과 위탁 모두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업무 중 사고가 발생 주요 원인에 대한 다중응답 분석 결과 위험 폐기물(깨진 유리 등)이 13.0%, 시민 협조 부족 9.6%,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8.9%,로 높게 나타남.
- 직영은 위험 폐기물(깨진 유리 등), 인력부족,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위탁은 위험 폐기물(깨진 유리 등), 시민 협조 부족, 차량에 의

한 교통사고, 작업(담당)구역이 넓음, 노후화된 수거차량 순으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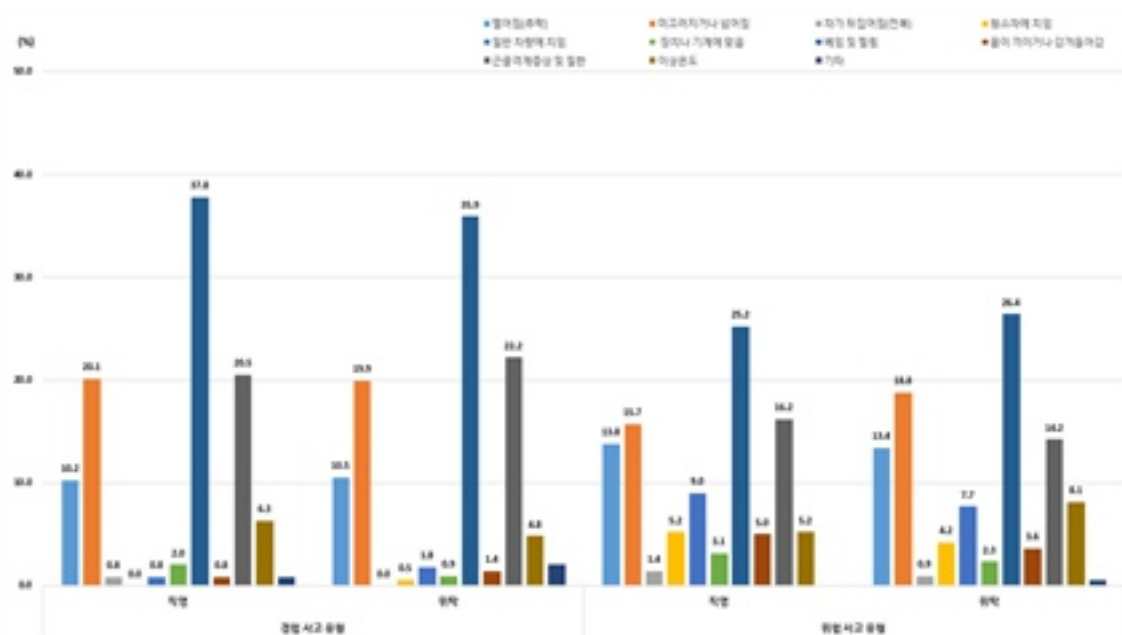


그림 8. 경험 사고

- 수거차량의 발판 금지(현행법)에 대한 인식은 90.3%로 나타났으며, 직영 86.7%, 위탁 92.3%로 직영에 비하여 위탁의 인식이 높게 나타남.
- 수거차량 후면 발판 탑승 이유는 보조석에 앉은 오르내림으로 무릎에 무리가 감 30.6%, 도보 이동거리가 멀어서 25.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작업이 편해서 습관적으로는 직영 10.9%, 위탁 17.3%로 직영에 비하여 위탁이 발판 사용 관련 습관적 발판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 사업장 운영 구분(직영, 위탁)에 따른 발판 사용 인식

구분		사업장 운영 구분		전체
		직영	위탁	
발판 사용 금지 인식	n	216	398	614
	%	86.7	92.3	90.3
발판 사용 금지 미인식	n	33	33	66
	%	13.3	7.7	9.7
전체	n	249	431	680
	%	100.0	100.0	100.0

표 22. 사업장 운영 구분(직영, 위탁)에 따른 발판 사용 이유

구분		사업장 운영 구분		전체
		직영	위탁	
수거인원 부족	n	51	66	117
	%	10.3	8.0	8.8
차량에 부착되어 있어서	n	12	11	23
	%	2.4	1.3	1.7
도보 이동거리가 멀어서	n	120	212	332
	%	24.2	25.5	25.1
생활폐기물 수거량의 과다	n	105	141	246
	%	21.2	17.0	18.6
기존 동료작업자가 탑승하 니까	n	3	0	3
	%	.6	.0	0.2
작업이 편해서 습관적으로	n	54	144	198
	%	10.9	17.3	14.9
보조석에 잤은 오르내림으 로 무릎에 무리가 감	n	150	256	406
	%	30.3	30.8	30.6
전체	n	495	830	1325
	%	100	100	100

- 수거차량의 문제 발생 경험은 74.6%, 직영 68.7%, 위탁 78.0%로 직영에 비하여 위탁의 수거차량 문제 발생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 사업장 운영 구분(직영, 위탁)에 따른 수거차량 문제 발생 경험

구분		사업장 운영 구분		전체
		직영	위탁	
경험	n	171	336	507
	%	68.7	78.0	74.6
미경험	n	78	95	173
	%	31.3	22.0	25.4
전체	n	249	431	680
	%	100.0	100.0	100.0

- 수거차량의 문제 발생 경험에 대한 다중응답 분석 결과 브레이크 14.6%, 타이어 15.2%, 압축(압착)기 21.0%, 리프트 14.9%, 각종 유압장치 34.0%, 기타 0.3%로 나타났으며, 각종 유압장치, 압축(압착)기로 인한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4. 사업장 운영 구분(직영, 위탁)에 따른 수거차량 문제 발생 이유

구분		사업장 운영 구분		전체
		직영	위탁	
브레이크	n	24	121	145
	%	6.9	18.7	14.6
타이어	n	48	103	151
	%	13.8	15.9	15.2
압축(압착)기	n	90	119	209
	%	25.9	18.4	21.0
리프트	n	42	106	148
	%	12.1	16.4	14.9
각종 유압장치	n	141	197	338
	%	40.5	30.5	34.0
기타	n	3	0	3
	%	.9	.0	0.3
전체	n	348	646	994
	%	100	100	100

- 사고 후 관리 방법에 대한 다중응답분석 결과 산재처리 36.7%, 공장처리 11.3%, 개인처리(의료보험) 7.8%, 개인설비처리 4.7%, 정도에 따라 공장 또는 산재처리 39.4%로 정도에 따라 공장 또는 산재처리와 산재처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직영은 산재처리 42.1%, 정도에 따라 공장 또는 산재처리 28.4%로 나타났으며, 위탁은 산재처리 33.9%, 정도에 따라 공장 또는 산재처리 45.3%로 나타나 운영 기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남.

표 25. 사업장 운영 구분(직영, 위탁)에 따른 사고 처리 방법

구분		사업장 운영 구분		전체
		직영	위탁	
산재처리	n	120	182	302
	%	42.1	33.9	36.7
공상처리	n	21	72	93
	%	7.4	13.4	11.3
개인처리(의료보험)	n	33	31	64
	%	11.6	5.8	7.8
개인실비처리	n	30	9	39
	%	10.5	1.7	4.7
정도에 따라 공상 또는 산재처리	n	81	243	324
	%	28.4	45.3	39.4
전체	n	285	537	822
	%	100	100	100

- 사고에 따른 부담 요인에 대한 다중응답 분석 결과 의료비 부담 17.6%, 직장에서의 퇴출 13.7%, 생계 걱정 33.6%, 건강장해 33.2%, 기타 1.9%로 생계 걱정과 건강장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영과 위탁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임.
- 직장에서의 퇴출은 직영 7.0%, 위탁 16.7%로 직영에 비하여 위탁이 높게 나타나 운영기관에 따른 차이를 보임.

표 26. 사업장 운영 구분(직영, 위탁)에 따른 사고 발생 시 부담 요인

구분		사업장 운영 구분		전체
		직영	위탁	
의료비 부담	n	63	160	223
	%	16.3	18.2	17.6
직장에서의 퇴출	n	27	147	174
	%	7.0	16.7	13.7
생계 걱정	n	156	270	426
	%	40.3	30.6	33.6
건강장해	n	135	286	421
	%	34.9	32.5	33.2
기타	n	6	18	24
	%	1.6	2.0	1.9
전체	n	387	881	1268
	%	100	100	100

5.3 환경미화원의 수집·운반 작업 관련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인식

-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의 경우 필요 보호 장구의 지급과 시민의 협조를 위한 홍보에 대한 인식은 위탁이 높게 나타났고, 주기적인 안전교육의 필요성, 편의 시설 확충(샤워실, 휴게실, 식당 등), 인력충원, 새벽 및 야간업무를 주간 업무로 전환, 법적인 근로시간 준수, 폐기물수거차량의 법적 관리(정비 및 점검 강화, 신속한 문제 해결), 폐기물수거통이나 차량의 구조개선, 종량봉투의 무게 제한, 발판 탑승 금지, 고용안정(정규직 고용)은 직영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7. 사업장 운영 구분(직영, 위탁)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

구분	근무형태	평균±표준편차
필요 보호 장구의 지급	직영	4.07±.904
	위탁	4.09±.850
주기적인 안전교육의 필요성	직영	4.06±.813
	위탁	3.90±.696
편의 시설 확충(샤워실, 휴게실, 식당 등)	직영	4.36±.771
	위탁	3.75±1.254
인력충원	직영	4.31±.822
	위탁	4.20±.802
새벽 및 야간업무를 주간 업무로 전환	직영	3.60±1.132
	위탁	2.60±1.297
법적인 근로시간 준수	직영	3.95±1.110
	위탁	3.65±1.043
폐기물수거차량의 법적 관리 (정비 및 점검 강화, 신속한 문제 해결)	직영	4.18±.922
	위탁	3.95±.927
폐기물수거통이나 차량의 구조개선	직영	4.12±.925
	위탁	3.92±.945
종량봉투의 무게 제한	직영	4.46±.842
	위탁	3.99±.920
발판 탑승 금지	직영	3.34±1.322
	위탁	2.91±1.294
고용안정(정규직 고용)	직영	4.57±.681
	위탁	4.22±.989
시민의 협조를 위한 홍보	직영	4.52±.702
	위탁	4.59±.748

- 직영은 고용안정(정규직 고용), 시민의 협조를 위한 홍보, 종량봉투의 무게 제한 순으로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위탁은 시민의 협조를 위한 홍보, 고용안정(정규직 고용), 인력충원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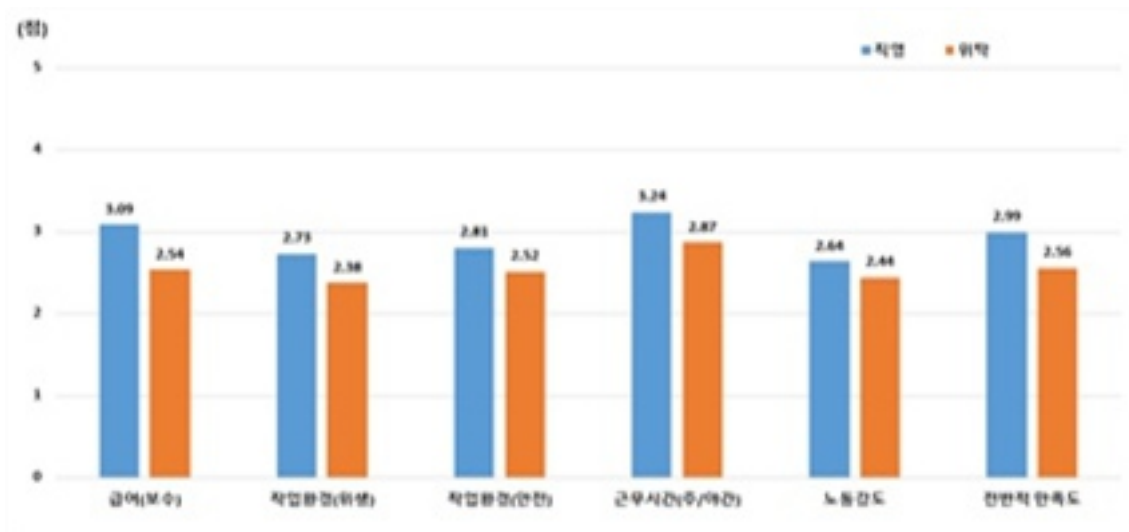


그림 9. 사업장 운영 구분(직영, 위탁)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 차이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시 안전보건 상의 공통된 문제점

- 차량 이동 시 시민들의 재촉 및 불편함에 대한 민원 등으로 작업의 어려움 호소
- 종량제 봉투의 사용에 대한 시민 의식 결여로 베임, 찢림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 새벽 및 밤 시간의 차량운행 시 민원 등으로 인한 작업의 어려움 호소
- 압축, 압착진개차의 경우 발판 안전, 소각장 및 자원회수 시설 이용 시 빨리 들어감, 손가락 절단 등의 사고 및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어 갈고리, 빗자루 등의 도구에 대한 개발이 필요함.
-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주택, 빌라, 상가 등의 경우 압축, 압착진개차까지 종량제 봉투 수거를 위하여 수레를 이용
- 음식물 폐기물의 경우에도 문전수거 방식의 수거 형태로 100L, 120L 등의 대형 쓰레기통에 담아 이동하는 동안 다리의 부상 및 근골격계질환 관련 업무상

질병이 발생

- 진개덤프의 경우 재활용 수집 시 땅을 이용한 덮개 사용, 재활용 차량 위 탑승 등 재해 위험 요인 발생
- 휴게시설, 샤워시설의 필수적인 설치가 요구되며, 안전보호구의 충분한 지급이 필요
- 사고 발생 시 산재처리 및 공상처리에 관한 관리가 필요

그림 1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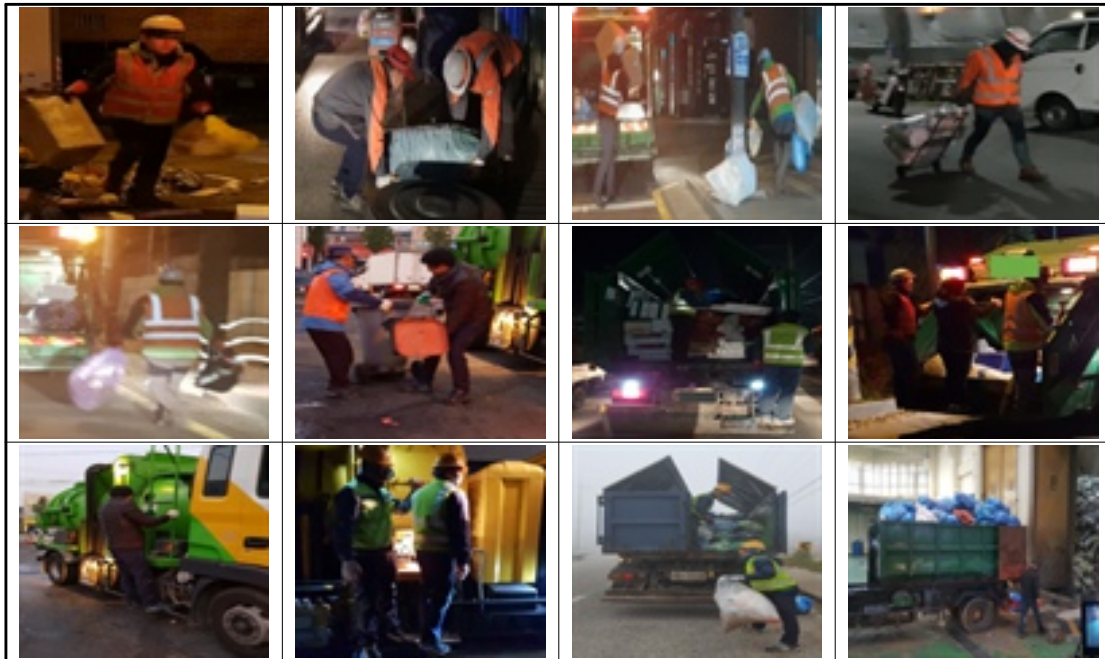


그림 11. 생활폐기물



그림 1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작업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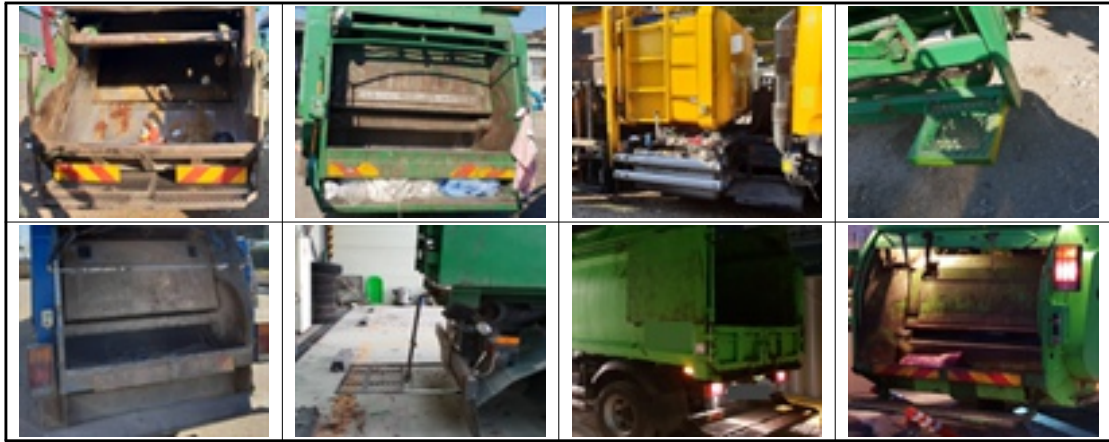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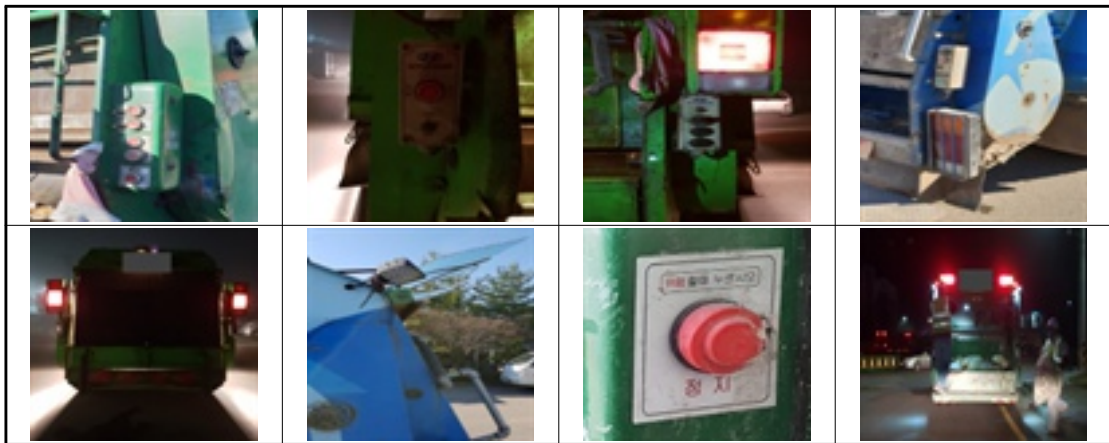


그림 1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안전장치



7.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감소방안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부분이지만 사고·사망의 재해 관리를 위해서 중앙부처는 모든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통일화된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기본 지침 및 법령이 마련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업체 선정 과정 및 선정 후 투명한 관리, 근로조건의 확인,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보건교육 및 보호구 착용의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의 지침 마련과 주체적 관리가 요구됨.
- 사업장은 사고 및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과정의 관리 방안 마련, 기

본적인 휴게 공간 및 작업환경 개선, 작업관리, 차량관리,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과 그에 따른 관리가 요구되며,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종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폐기물협회 등 유관단체는 산재처리를 비롯한 공무 중 부상처리 등의 사고 처리 과정에 대한 자료 관리, 안전보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제안하며, 안전보건공단은 다양한 업무 환경과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현장에 대한 확인과 작업 공정에 대한 표준화 및 사고·사망에 대한 안전가이드 실행 여부의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생활폐기물 취급 근로자들의 휴식시간 확보 및 질병예방 등의 건강권 확보와 직무에 대한 이해측면, 기본적 근로환경 확보를 위하여 휴게시설, 식당, 샤워시설에 대한 법적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고 및 사망 감소 화를 위하여 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을 통한 지속적인 안전보건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건강검진 등의 전문성이 확보된 관리자의 역할이 필요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발견 시 안전거리 확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활용 방법, 차량 운전 시 안전 확보 등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대국민 캠페인이 요구됨.

참고문헌

- 강소희, 심희, & 안재정. (2010). 김포 지역 환경미화원의 근로 환경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39-241.
- 김광덕, & 이병규. (2008). 울산지역 환경미화원의 미세먼지 노출특성.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35-236.
- 김신범, 류승훈, 박동욱, & 이윤근. (2010).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한 제안. 한국환경보건학회지, 36(3), 247-253.
- 김혜진, & 추진아. (2012). 거리환경미화원의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자각증상과의 관련성. 한국간호과학회 학술대회, 280-280.
- 명준표, 이향기, 김형렬, 정혜선, 정은희, 남웅, & 구정완. (2008). 환경미화원의 작업별 근골격계질환 자각증상 특성과 상지의 인간공학적인 평가. 대한직업환경의학학회지, 20(2), 93-103.
- 박종관(2017).지자체 환경미화원의 일반현황 및 산업재해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울특별시(2016).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자료
- 안전보건공단, 환경미화원 종사 사업장의 세척시설에 관한 기술지침(H-175-2015)
- 안전보건공단,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침(H-10-2012)
- 이향기, 명준표, 정은희, 정혜선, & 구정완. (2007). 거리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증상의 특징 및 인간공학적인 평가. 대한인간공학회지, 26(4), 147-152.
- 최은숙. (2010). 환경미화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간호과학회 학술대회, 192-192.
- 최은철. (2014). 생활 쓰레기 수거 작업자의 사고원인 분석을 통한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환경부(2017)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16년도)
- 환경부 보도자료(2018.01.15.)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근본적으로 줄인다
- Cho, K., Cho, M., Kim, H., & Kim, J. (2012). 대구지역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발생특성 및 예방에 관한 연구.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68-172.
- Kim, H., Kim, Y., Cho, K., Cho, M., Kim, J., Cho, D., ... & Park, J. (2011).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고찰.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78-85.
- COLLECTION OF DOMESTIC WASTE CODE OF PRACTICE
- Dirty and Dangerous Worker Safety and Health in New York City's Scofflaw Commercial Waste Industry
- Health hazards in the waste and recycling industry(HSE)
- Health and Safety Issues in the Solid Waste and Resources Industry
- RECYCLING SECTOR INJURIES AND WORKER SAFETY BULLETI

In Harm's Way

Risks and Hazards for Recycling and Waste Workers in the Bay Area

RR240 - Mapping health and safety standards in the UK waste industry(HSE)

SAFE WORK PROCEDURE SWP 036 MECHANICAL STREET SWEEPER, SAFE WORK

PROCEDURE SWP 025 MECHANICAL FOOTPATH SWEEPING / CLEANING

COLLECTION OF DOMESTIC WASTE CODE OF PRACTICE

한국폐기물협회 http://www.kwaste.or.kr/bbs/content.php?co_id=sub0413

통계청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77

Waste management and recycling(HSE), <http://www.hse.gov.uk/waste/index.htm>

NJHealth(Workplace Health and Safety) http://www.nj.gov/health/workplacehealthandsafety/occupational-health-surveillance/solidwaste_recycle.shtml#2

OSHA(Collection) https://www.osha.gov/SLTC/recycling/recycling_collection.html

<https://swana.org/Safety/SafetyNews.aspx>

<https://waste-management-world.com/a/a-dangerous-business>

<http://www.wasterecycling.org/?page=Safety>

<https://www.citylab.com/life/2015/06/how-cities-can-make-work-safer-for-recycling-workers/396899/>



안전하고 차별없는 환경미화원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다.**<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 ▶ 주간근무 확대, 폭염·강추위 시 작업기준 및 표준인력모델 마련 등 근무여건 개선
- ▶ 위탁근로자 등 기본급 단가 및 복리후생비 등 현실화, 지자체 위탁업체 지도감독 강화

□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8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권익위원장, 공정위원장, 기재부1·교육부·고용부 차관, 금융위 사무처장, BH 정부비서관 등

◆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17.11~'18.2)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17.11.16) 광주 남구, 수거작업을 하다 잠시 내린 사이 후진한 차량에 치여 사망

('17.11.29) 광주 서구, 매립장에서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머리를 다쳐 사망

('18. 2.23) 서울 용산구, 청소차 컨테이너 교체 작업 중 유압장비에 끼여 사망

□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주간근무 원칙을 확대('18년 38% → '19년 50%)하고, 폭염·강추위와 같이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적용할 작업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왕시의 경우 '11년 주간근무로 전환한 이후 사고율 43% 감소

- 또한, 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을 설정하는 등 과중한 작업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같은 건강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절단방지장갑, 차량 후방카메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등 실효성 있는 안전장비도 갖추어나가겠습니다.

②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미화원 대부분(56.2%)이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직영-위탁 근로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 근로자의 임금, 복리후생비 등을 현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 위탁업체가 계약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탁계약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따르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을 개정하겠습니다.
- 또한,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경미화원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고용안정 확보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행안부·환경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환경미화원, 위탁업체, 전문가 참여

③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환경미화원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환복만 가능한 열악한 휴게시설을 세면·세탁 등 근로자

휴식이 가능한 쾌적한 휴게시설로 개선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조정을 통해 지자체 예산확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지자체와 지역주민, 환경미화원 간 적극적인 소통방안*을 마련해 갈등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 (의왕시 우수사례) 간담회 개최, 무기명 건의함 운영, 단체 대화방을 통한 정보공유

□ 이번에 마련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추진과제(11개)는 내년 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 중앙-지방간 협력체계(근무환경 개선 협의체)을 중심으로 이행상황도 지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은 8월 중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 할 예정입니다.

※ (붙임) 1.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실행계획

담당자 :

<총괄> 국조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서영석, 서기관 이경수 (044-200-2056, 2057)
환경 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과장 이상로, 사무관 박종현 (044-200-2092, 2095)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과장 박연병, 사무관 송정아 (02-2100-3703, 3704)

붙임 1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실행계획

추진시기	주요 추진 과제	실행방안
【1단계】 우선 즉시	① 환경미화원작업안전 지침 마련	▶ 지자체·위탁업체·근로자 준수사항을 지침으로 마련·보급
	② 지자체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실시	▶ 개선방안 공문 시달 후, 교육(고용부) 등 지자체 이행 지원
	③ 지자체의 위탁업체 관리·감독 강화	▶ 개선방안 공문 시달 후 지자체 이행상황 점검 및 컨설팅 지원
	④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선	▶ '19년 예산편성방향에 환경미화원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재정투자 강화 내용 반영
【2단계】 12월까지	① 지자체 특별재정 지원	▶ 시·군·구 수요조사 후 휴게시설 개선 특별재정 지원
	② 지자체 재정투자 확대 유도	▶ 보통교부세 배분액 산정기준 개선 (폐기물 관련 수요 가중치 상향 조정)
	③ 안전기준 설정 및 매뉴얼 개선	▶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 ▶ 작업안전수칙 매뉴얼 개선 후 지자체·위탁업체 보급
	④ 기상상황별 작업기준 마련	▶ 환경미화원을 위한 기상상황별 작업 중지 등 가이드라인 마련 ※ 지자체, 위탁업체 보급
【3단계】 내년까지	① 표준인력모델 마련 및 임금체계 개선	▶ 구·신도심, 농어촌 등 유형별 표준인력 모델 마련·보급 ▶ 임금은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통해 개선안 마련
	② 주간근무 원칙 확대 적용	▶ 개선방안 공문 시달 후, 지자체 추진상황 점검 및 컨설팅 지원 ※ 주간근무 전환 수범사례 등 전달 공유
	③ 고용형태 개선방안 등 검토	▶ 하반기 정책방향 발표(고용부) 후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통해 추진방안 논의

⇒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근무환경 개선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지자체 추진과제 이행여부 점검·관리(~'19.4월)

<요약본>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 지난해 말 광주시 남구 등에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안전 관리 기준과 고용형태 등 근본적인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됨

□ 현황

* 위탁업체 1,612개

- (고용형태) 4개 분야, 총 4만3천명 근무('18.5월, 직영 1.9만명, 위탁 2.4만명)

분 야	총 원	직영·공영화	민간위탁
합 계	43,390	18,992(43.8%)	24,398(56.2%)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 수집·운반	13,099	4,018(30.7%)	9,081(69.3%)
가로 청소	13,377	10,748(80.3%)	2,629(19.7%)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7,405	1,474(19.9%)	5,931(80.1%)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9,509	2,752(28.9%)	6,757(71.1%)

- (근무여건) 시·군·구별 고용계약 체결로 지역별 근무여건 상이

- (1인당 평균임금) 월 389만원 * (직영) 평균 424만원, (위탁) 평균 363만원
- (근무일수) 주 5일(40시간) 34%, 주 6일(46~48시간) 62%, 주 5.5일(격주) 4%
- (근무시간) 주간(06시 시작) 38%, 야간(20시 시작) 31%, 새벽(04~05시 시작) 25%, 혼용* 6%

* 일반쓰레기는 주간, 음식물쓰레기 등은 야간·새벽 수거

※ 가로청소는 주간(62.0%),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은 새벽·야간(67.2%) 운영 다수

- 문제점 * 현장방문, 환경미화원 및 지자체 공무원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

① 안전사고 노출

* (재해율) 환경미화원 1.35% vs 제조업 0.62% vs 건설업 0.84%

- (야간·새벽근무) 야간·새벽 근무(56%)로 어두운 작업환경에서 베임·찢림 사고 다수 발생, 생체리듬이 깨져 피로누적으로 위험 대처 능력 저하

※ 최근 3년간 신체사고 1,465명 중 베임·찢림 등 자상 636명(43.4%), 골절 644명

(44.9%)

- **(과다한 작업량)** 차량별 최소 작업인원*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인별 업무량이 많고, 1인당 적정 작업량 표준 부재
 - ‘톤당 단가’ 방식 계약으로 물량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작업 진행
 - 많은 작업량을 채우기 위해 시간에 쫓기면서 무리한 수거·운반 작업을 실시함에 따라 사고 발생

* (환경미화원) 일반쓰레기 차량별 3명,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 2명 필요

- **(안전기준·장비)** 예산상 문제 등으로 차량 안전 미확보 및 안전장비 미비

- 차량 후방카메라 등이 없어 동료 위치 확인이 어렵고, 저상차가 아닌 관계로 승·하차시 불편(관절 등에 무리), 노후차량 운행 등

※ (차량) 후방카메라·긴급정지버튼 미설치, 불법발판 탑승 등
(장비) 절단이나 찢림방지용 장갑, 안전화, 경량 안전모, 연락용 무전기 등

- **(건강관리 미흡)** 구체적인 악천후 작업기준 부족으로 위험에 노출, 파상풍 등 예방접종 미실시, 휴게실은 대부분 설치(97%)되었으나 열악

※ 현장확인 결과 환복만 가능한 열악한 수준

② 환경미화원 관리체계 미흡

* (고용형태) 직영·공영화 43.8%, 민간위탁 56.2%

- **(적정임금 등 복리후생 미흡)** 직영 대비 위탁업체 종사자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40~50만원 차이)
 - 지자체 예산 형편에 따라 환경부 고시에 명시된 ‘건설업 보통

노임 단가' 적용률*에 차이 발생

* 의왕시 100%, 서울 00구 70% / 상여금 비율도 0~400%까지 다양

- 지자체의 위탁업체 변경시 종사자 고용불안 문제도 상존

- (위탁업체 관리·감독 부실) 지자체의 계약사항 이행 여부 지도·점검 미흡으로 기준 이하의 인력·임금 운용, 안전장비·시설 부실 운영
- (관리자 전문성 부족)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기피부서)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위탁계약 이후 이행상황 모니터링 미흡

3 이해당사자 간 소통부족으로 신뢰관계 미흡

- (신뢰·소통) 지자체-위탁업체-종사자 간 원활한 소통이 부족하고 국민들의 청소행정에 대한 신뢰도 미흡
 - ※ 위탁업체와 종사자 간 갑·을 관계가 형성돼 불만 제기 곤란
- (표준모델 부재) 차량·인력·장비 등에 대한 표준화 된 모델이 없어 이해당사자 간 갈등요인으로 작용

□ 주요 개선방안

◆ (기본방향)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인식·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①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제도개선 및 예산 확대 ②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정임금 지급 유도 및 고용형태 개선 ③이해당사자 간 소통 강화에 노력

◆ (목표) ① 환경미화원 주간근무 확대 (38%^(18년 현재) → 50%^(19년))
② 재해율 감소(1.35%^(16년) → 1.08%^(19년) → 0.68%^(20년))

* 제조업 수준으로 개선

1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

- (주간근무 확대) 지역별 여건 감안해 전환 38% → 50%('19년)
 - 저녁 시간대 지역주민 민원 대처를 위해 '야간기동반' 등 운영
 - ※ 의왕시 '11년 주간근무로 전환 후 산재발생건수 43% 감소(3년간 7건 → 4건)
 - ▲일출 후 작업을 실시해 시야 확보를 통한 베임·찢림사고 감소 ▲충분한 수면을 통한 정상적인 신체리듬 유지로 피로감 해소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 등
- (표준인력모델 마련) 차량유형(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수거차량)별 근무체계 확립, 지역여건에 맞는 작업속도·작업량 마련('18.12.)
 - ※ 일반쓰레기·재활용 수거차량은 3인 1조, 음식물쓰레기는 자동화로 2인 1조 투입
- (지역도급제 방식 계약 권고) 위탁계약시 지역내 운반거리, 시간, 수거량 등 원가에 따른 총액 지급 방식 권고('18.11.)
 - ※ 무리한 작업 예방, 시간에 쫓기지 않아 작업자 간 소통이 가능해 사고 예방
- (시설·장비 등 안전기준 설정 및 제도화) 안전장비 품목·기준 및 실태조사 의무화(『폐기물관리법』 국회 상정·논의 중)('18.12.)
 - ※ 법안처리 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환경미화원작업안전지침』 제정('18. 9)
- (기상상황별 작업기준 마련) 악천후 시 업무지침 구체화('18. 8.)
 - ※ 작업시간 탄력 운영, 폭염시 탈진방지를 위한 약품 제공 등
- (환경미화원 건강관리) 지자체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태 정기점검('19. 1~) 및 합동평가 반영('19. 6.)

2 고용안정성 확보

- (적정임금 지급 유도) 노임, 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① (표준임금모델 마련) 환경미화원 특성을 고려한 기본급 기준 단가, 복리후생비, 보험료 단계적 현실화 추진 및 지자체 독려('19. 3)
- ②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반영) 위탁계약시 고용부 고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를 따르도록 재차 강조('18. 9.)

○ (지자체의 위탁업체 지도·감독 강화) 계약 준수여부 등 위탁업체 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 조치('18. 9.)

- 평가항목에 위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보장 등 고용안정성 지표 반영 검토

- ※ 지자체 합동평가에 지표 신설, 성과 우수 지자체 포상('19. 6)
- ※ 정부합동감사시 지자체의 위탁업체 관리실태 점검 및 컨설팅('18. 9.), 시·도 중심으로 시·군·구 위탁계약 실태 일제점검 실시(~'18.12.)

○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 구성·운영) 관계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18. 9)해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점검 및 고용안정 확보방안 마련('19. 4.)

- 민간업체-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고용승계 등 실질적 처우개선 추진

- ※ (참여) 행안부, 환경부, 고용부, 지자체, 환경미화원, 위탁업체, 전문가 등
- 원활한 협의체 운영을 위해 T/F 운영 (단장 : 행안부 실장급)
- ※ (의왕시) 건설노임단가 100% 적용, 종사원 임금액 계좌입금내역 확인(매월)으로 위탁 환경미화원 근무만족도 높음

3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 확대 및 신뢰 확보

○ (지자체 예산확대 유도) 청소행정 분야 재정투자 확대 <행안부>

- ① 예산액 대비 청소행정예산이 많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배분액이 증가할 수 있도록 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추진('18.12.) * '폐기물 관련 수요' 가중치(現 5%) 상향조정 등
- ②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예산편성방향에 관련 내용 반영('18. 8.)
- ③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쉼터) 조성 등 자치단체 특별 재정 지원('18.10)

○ (신속한 민원 대응) 청소행정 민원에 따른 주민들과 환경미화원들의 불필요한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청소행정의 신뢰도 제고

- ※ 청소차량에 GPS를 부착해 청소 실시여부에 대한 주민 민원에 과학적으로 대응, 단체 SNS방을 운영해 수시로 발생하는 청소관련 문제 해결
- ※ 야간 발생 청소민원은 ‘야간기동반(공무원, 환경미화원)’을 운영해 신속 대응
- **(환경미화원과의 소통 강화)**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소속감 고취, 지자체-환경미화원 간 소통 기회 확대
 - ※ (의왕시) 시장과의 간담회 개최, 무기명 건의함 운영, 체육대회 개최 등
 - 무기명 건의 수렴·반영(2017년) : 상여금 250% 인상, 노후차량 교체(7대) 등
- **(관리자 전문성 강화)** 전문직 채용(환경직렬 공무원 배치, 전문경력직 특채 등) 확대, 공무원교육기관에 교육프로그램 개설, 워크숍 등을 통한 관리자 교육 및 사례 공유 등
- **(우수사례 전파)** 우수사례 발굴·포상 및 전국 확산('18. 9~)

참고 1

대책 시행 후 달라지는 제도·모습

	현행 (As-is)	개선 (To-be)
1. 합리적 근무방식 개선	• (작업시간) 위탁근로자 야간 근무 다수(생활폐기물 67%) • (작업중지) 폭염·강추위 등 날씨에 따른 작업중지 기준 미비 • (인력) 차량 3인 1조 등 근무체계 미확립 • (업무부담) 무게 상한규정 없고, 고지대 가정별 방문수거	• 작업시간 주간 원칙으로 운영 ※ 지역여건(주민반대) 고려 탄력 운영 • 폭염·강추위, 기상악화시 작업중지 기준 마련 • 인력 표준안 마련을 통한 적정인력 확보 •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규정 도입, 거점수거시설 확충
2. 차별없는 근무여건	• (임금·수당) 직접고용 근로자 대비 위탁 근로자 임금·수당 낮은 수준 • (휴게시설) 세면 등이 불가능한 열악한 환경의 휴게시설 • (관리·감독) 지자체의 위탁업체 관리·감독 체계 미확립 • (위탁계약) 고용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만 낙찰률 이상 임금지급 의무화 규정	• 위탁근로자 임금·수당 기준 합리적 개선(관련고시 개정) ※ 위탁업체 지도·감독 강화 • 세면·목욕, 세탁·탈의 가능한 수준의 휴게시설 구비 • 근로자 임금 지급 등 업체의 위탁계약 준수 관리·감독 강화 • 고용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따르도록 계약기준(행안부 예규)에 반영·강조
3. 안전한 작업환경	• (안전기준) 작업안전기준 미법제화, 안전장비 구체적 기준 미비 • (안전교육) 작업매뉴얼 부족, 지자체·업체별 자체 교육 • (지자체) 산업안전보건위 미설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 (재원대책) 지자체의 청소행정 재정투자 부족 • (차량) 대형 위주의 노후화 차량 다수, 대부분 발판 탑승수거	• 작업안전기준 법제화*, 안전장비 품목별 안전기준 마련 *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 • 작업매뉴얼 개선,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안전교육 등 실시 • 산업안전보건위* 설치·운영,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 지자체(사업장)별 1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 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특별 재정지원 등 지자체 재정투자 확대 유도 • 한국형 청소차 개발·보급, 친환경 청소차 보급 확대
4. 중앙-지방 협력	• (협력체계) 중앙-지방 간 협력 미흡	• 중앙-지방 간 안정적·지속적인 거버넌스 구축

□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 지자체 환경미화원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실시('18.3.15.~3.30.)
 - 고용형태, 임금, 근무시간 등 처우, 안전사고 발생건수 등
- 노동환경 개선대책 추진과제 발굴 관계부서(행안부) 회의('18.4.2.)
- 노동환경 개선대책 추진과제 발굴 관계부처(환경부, 고용부) 회의(3회)
 - (1차/4. 5) 노동환경 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 논의
(지방자치분권실장 주재)
 - (2차/5. 4) 개선대책 부처별 추진과제 발굴 및 논의
(지방자치분권실장 주재)
 - (3차/6.19) 개선대책 부처별 추진과제 논의
(지방행정정책관 주재)
- 노동환경 개선대책 지자체 관계관 회의('18.5.18, 7.27.)
- 환경부 주관 『환경미화원안전관리 포럼*』 운영('18.4.12.~)
 - * 관계부처, 지자체, 노조, 업계, 학계, 전문가, 연구원 등 참여
- 환경미화원 실태조사 지자체 현장지원반 구성·운영('18.4.16.~)
 - 시·도별 책임관(국장급) 현장 방문 및 지자체 애로·건의사항 청취

□ 이해관계자 및 현장의견 수렴

- 환경미화원 노조 관계자 간담회 및 의견수렴(총4회)
 - (1차/5. 3.) 지방행정정책관 주재, 민주노총(3), 한국노총(2) 관계자 참석
 - (2차/5.11.) 지방행정정책관 주재, 민주노총(5), 한국노총(2) 관계자 참석
 - (3차/7.18.) 지방행정정책관 주재, 민주노총(5), 한국노총(2) 관계자 참석
 - (4차/7.24.) 자치행정과장 주재, 민주노총(6), 한국노총(2) 관계자 참석
- 한국생활폐기물 협회 의견수렴(5.16., 생활폐기물협회 사무국장)

- **환경미화원 근무현장(서울 중구)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5.28.)**
 - 행안부, 서울시, 노조(한국노총, 민주노총) 관계자 합동 현장확인
 - 차량, 안전장비, 휴게시설 등 점검, 근무조건 등 애로사항 청취
- **노동환경 개선대책(안) 전문가 자문회의(6.11.)**
 - 개선대책(안)에 대한 의견청취, 산업안전 등 전문가 4명
- **환경미화원 근무현장(경기 의왕시) 방문 및 의견 청취(8.2. 행안부 차관)**
 - 의왕시 개선 사례 청취 및 현장 환경미화원 의견 청취

☎ 보도일시: 2018. 11. 1.(목) 조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인터넷 2018. 10. 31.(수) 12:00 이후> 과 장 고광훈 (044-202-7722)
☎ 총 3쪽 사무관 김영남 (044-202-7726)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환경미화원 고용업체 산재예방 「기획감독」 실시 - 지자체 직영 39개소, 위탁 71개소 등 총 110개소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업재해에 취약한 전국 환경미화 사업장 11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 (11.1~12.14., 8주)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 지방자치단체 39개소(직접고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업체 71개소
 - **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기안물, 유해위험 작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정하여 실시
- 이는, 올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8.8.)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이번에 실시하는 기획감독은 사고가 많이 발생한 청소차, 지게차 및 컨베이어 등 시설·장비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와 함께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무거운 쓰레기 운반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 및 산업재해에 대한 기록·보존 의무 준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점검결과 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노동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바로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한편,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는 지난 3년('15년~'17년)간 재활용수거차량에서 떨어짐, 청소차 적재함에 끼임 등으로 총 1,822명이 발생(사망 18명·부상 1,804명) 하였다.
- 특히, 지난해 말부터 환경미화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 광주 남구, 후진하는 청소차에 치여 사망('17.11.16.)
 광주 서구,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머리를 다쳐 사망('17.11.29.)
 서울 용산구, 청소차 컨테이너 교체 중 유압장비에 끼여 사망('18.2.23.)
 부산 기장군, 청소차 뒤편 발판에서 떨어져 사망('18.9.10.)
-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 “국민들께서도 환경미화원이 거리청소, 쓰레기 수거·운반 중 새벽 또는 야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김영남 사무관(☎044-202-77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관련 주요 재해특성

▶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재해자(1,822명)의 특징

- 50대 이상 고령자가 전체의 61.6%(1,123명)를 점유
- 5년 이상의 경력자가 전체의 45.2%(823명)를 점유
- 주말이 지나고 첫 작업일인 월요일에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 아침 5시부터 10시 사이에 집중 발생
- ※ 깨끗한 거리를 낮시간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 심야~오전 사이에 작업 실시

▶ 위탁업체가 직영보다 재해자, 사망재해가 많은 이유

- 도로(가로) 청소 등 경미한 작업은 직영으로 처리(주로 주간작업)
-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은 위탁업체에서 처리(주로 야간·새벽작업)

○ 환경미화원 관련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15년~'17년) 사망 18명(직영 2명, 위탁 16명), 부상 1,804명 발생
- 생활폐기물을 직접처리하는 직영업체의 경우 824명(45.2%), 외부위탁을 맡기는 위탁업체는 998명(54.8%) 발생

(단위: 명)

구분	재해자 수			사고 사망자 수		
	전체	직영	위탁	전체	직영	위탁
계	1,822	824	998	18	2	16
'17년	584	238	346	4	-	4
'16년	641	293	348	6	-	6
'15년	597	293	304	8	2	6

※ 「지자체 합동명가자료」 기준

☎ 보도일시: 2019. 1. 14.(월) 조간
<인터넷 2019. 1. 13.(일) 12:00 이후>
☎ 총 2쪽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과 장 고광훈 (044-202-7722)
사무관 피해근 (044-202-7723)
사무관 김영남 (044-202-7726)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환경미화원 안전보건실태 감독결과 - 14개소 형사입건, 82개소에는 과태료 4억5천여만원 부과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8년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 업체 109개소(지자체 40개소, 민간위탁 69개소)에 대하여, 환경미화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예고 없이 하였다고 밝혔다.

*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기인물, 유해·위험작업 등에 대해 단속기간을 정해 실시

○ 이는 '18년 8월 관계부처(행안·환경·산업·노동) 합동으로 수립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하나이다.

□ 이번 감독결과 환경미화원이 늘 사용하는 청소차량에 추락위험이 있는 탑승설비를 설치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 일부 사업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싣고 내리는 동안 발생하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업체 **14개소**(지자체 2개소, 민간위탁 12개소)에 대해서는 **바로 형사입건**을 하고,

○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82개소**(지자체 27개소, 민간위탁 55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4억5천여만원)를 부과하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토록 시정명령**하였다.

※ 위반사항에 따라 형사입건과 과태료는 중복하여 처벌될 수 있음

□ 고용노동부는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이 많은 사업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어,

○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주요 위반사례를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법 위반 사항을 개선·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감독을 강화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김영남 사무관(☎044-202-77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국민의 생활 환경 담당부 보다 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년 3월 6일 조간 (3. 5.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권병철 과장 / 김지수 사무관 044-201-7360 / 7363
	배포일시	2019. 3. 4. / 총 19매	

환경미화원 낮에 일한다...작업안전 지침 마련

- ◇ 야간과 새벽작업에서 안전한 주간작업으로 전환
- ◇ 사람 중심의 안전한 청소차가 갖춰야 할 안전장치 구비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야간과 새벽 작업에서 낮(주간)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3월 6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 지난 2015~2017년간 작업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이 총 1,822명(사망자 18명)에 달하며, 특히 환경미화원이 후진 하던 청소차량에 치어 사망하고,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기도 하였다.
-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지난해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자체장, 청소대행업체 대표, 환경미화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담았다.
- 이번 지침은 실제 청소현장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미화원 공개토론회(포럼, 2018년 2~12월)결과를 토

대로 하여 정부합동으로 구성된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협의회 (2018년 11월) 논의, 지자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소차량 안전기준) 청소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청소차량 후면과 측면에서의 작업자의 위치와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 청소차량의 적재함 덮개, 압축장치에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미화원이 직접 제어하는 ‘안전스위치’와 손이 끼일 경우 무릎 등 다른 신체를 이용하여 즉시 멈출 수 있는 ‘안전멈춤빔장(바)’를 설치토록 했다.



※ (지자체 기 운영 사례) 강원도 정선군 저상형 안전 청소차량 4대 최초 도입, 광주광역시 서구 6대 도입 시범운영 중

- 또한, 작업 특성상 청소차량의 배기가스에 상시노출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청소차의 배기관의 방향을 왼쪽 90도(차도 방향)로 전환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차량안전기준에 특례로 반영했다.

② (보호장구 안전기준)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할 때는 경량안전

모, 안전조끼, 안전화, 절단방지장갑,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착용토록 보호장구 안전기준도 규정했다.

- ③ **(주간작업으로 전환)** 야간과 새벽 어두운 환경에서 수면부족, 피로누적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집중됨에 따라 작업시간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 다만, 주간작업의 구체적인 시간대 설정은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노사협의,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자체의 청소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 주간작업으로 기 전환한 지자체별 사례 >

지자체명	기존 작업시간대	개선
정선군	05:00~14:00	09:00~18:00
의왕시	02:00~10:00	06:00~15:00
정읍시	02:00~07:00	05:00~11:00

-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 일부 상가지역 주차차량으로 인한 청소작업 불편 등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감안, 지자체로 하여금 주간근무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협조 사항을 사전에 홍보·안내하는 노력도 병행하도록 했다.
- ④ **(3인 1조 작업)** 종량제 봉투,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 폐기물 등 수집·운반 중에 환경미화원 1인이 들기 어려운 작업은 3인 1조 이상(운전원 1, 상차원 2)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 상차원: 쓰레기를 실는 작업을 하는 환경미화원

- 골목길 손수레, 가로청소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음식물쓰레기)을 이용한 작업 등 지역 및 작업여건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두었다.

⑤ (악천후로부터 보호) 환경미화원이 폭염·강추위, 폭설·폭우, 강풍,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어 작업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작업시간 단축 및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 환경부의 작업안전지침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작업에 종사하는 상차원, 가로청소원, 운전원 등 전국의 약 4만 3천 명 환경미화원에 적용되며,

○ 지자체장 및 청소대행업체 대표가 지침 준수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지침의 주요 골자가 담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법개정으로 인한 구속력 강화로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더욱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국민들도 일상생활에서 날카롭거나 위험한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환경미화원이 아닌 나의 가족, 누군가의 가족이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하고 올바르게 버려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 전문.
2.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현황 및 중대사고 사례.
3. 취급이 위험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4. 질의응답.
5.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김지수 사무관(044-201-73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배경 및 목적

□ 일부 지자체에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 17.11~)

- ▶ ('17.11.16) 광주 남구, 수거작업을 하다 잠시 내린 사이 후진한 차량에 치여 사망
- ▶ ('17.11.29) 광주 서구, 매립장에서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머리를 다쳐 사망

□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지자체"라 한다),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업체 대표(이하 "대행업체"라 한다) 및 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II 운영 기간

□ 동 규정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행업체도 적용되는 규정임을 감안, 폐기물관리법에 정식 법제화*되기 전까지 가이드라인으로 운영

* 환경미화원 안전관리 규정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2018. 9월 법사위로 회부되어 계류된 상태임

□ 법제화가 완료되면 법에 근거한 구속력이 있는 별도의 안전 기준과 안전지침(고시 형태)으로 관리 예정(위반시 처벌가능)

III 기본 원칙

□ 지자체와 대행업체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

- 지자체는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지자체와 대행업체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지침으로 정하는 기준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환경미화원은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지침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며 지자체, 대행업체 등이 실시하는 안전 조치에 따라야 함

IV 적용 대상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책무가 있는 지자체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지자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운전원 포함) 및 지자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의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상차원, 가로청소원 등에 적용

< 적용대상 환경미화원 현황>

○ 4개 분야, 총 4만3천명 근무('18.5월 기준, 직영 1.9만명, 위탁 2.4만명)

청소작업 유형	총 원	직영·공영화	민간위탁
합 계	43,390	18,992(43.8%)	24,398(56.2%)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 수집·운반	13,099	4,018(30.7%)	9,081(69.3%)
가로 청소	13,377	10,748(80.3%)	2,629(19.7%)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7,405	1,474(19.9%)	5,931(80.1%)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9,509	2,752(28.9%)	6,757(71.1%)

- 일반 종량제봉투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가능자원, 대형 폐기물, 가로 청소 등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작업에 적용

V

세부 사항

<1> 안전기준

1] 청소차량 안전기준

□ 영상장치 설치

- 운전자가 청소차량 후면과 측면에서의 작업자 위치와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 설치
 - 특히 압축청소차는 덮개(파카, packer) 개방시 덮개 안쪽이나 아래에 작업자가 있는지를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 설치

□ 상차원이 직접 작동할 수 있는 안전장치 설치

- 차량 후방 측면에 적재함 덮개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설치
 -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적재함을 닫지 못하도록 적재함 닫힘스위치를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이전 설치

* (양손 조작방식 안전스위치) 양쪽 버튼 모두를 동시에 누르고 있을 때만 작동하는 것으로써, 조수석의 닫힘스위치 조작 시 적재함 덮개와 하단부가 최소 1m 간격이 남고, 마지막 닫힘은 오직 외부의 안전장치에 의해 닫히는 구조

- 덮개가 열린 상태에서 유압호스의 파손으로 유압이 급격히 떨어져 덮개가 갑자기 닫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설치

* 덮개의 불시하강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강도를 가진 안전바 등 안전장치

- 작업도중 쓰레기 압축장치에 손이 끼일 경우 무릎 등 다른 신체 부위를 이용하여 회전판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안전멈춤바를 청소차 후면에 설치
 - 단 차량후면에 쓰레기통을 들어 올리는 장치(Bin Lifter)가 장착되어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



□ 배기관 방향 전환

- 차량 후방에서 주로 작업을 하는 압축청소차는 배기관의 열림 방향을 자동차의 길이방향에 대하여 왼쪽* 90도 이내로 설치

* 왼쪽방향은 차도 방향을 의미하며, 오른쪽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보행자 통행, 반지하 거주지에 배기가스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

※ 밀폐형 압축 청소차의 안전기준 특례를 인정받음('18. 9. 7,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

□ 기타 권장사항

- 청소차량에 작업표시등, 반사띠 부착
- 동절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적재함 내부의 음식물쓰레기를 골고루 펴주기 위해 적재함 위에 올라가 작업할 때 낙상위험이 높으므로 작업자가 적재함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고정식 사다리를 제거하는 방안을 권장함

* 작업 상 불가피하게 적재함 위에 올라가야 할 경우에는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 가능

-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작업유형을 감안 오토매틱 기어를 권장함
- 장기적으로 저상형 청소차, 천연가스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청소차를 도입하여 기존 청소차량 교체 추진

2] 보호장구 안전기준

- 다음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인증받은 청소장비를 착용하고 청소작업 실시
 - (안전모) 상부나 측면부에서 발생하는 충격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갖춘 안전모
 - 단, 가로청소원은 일반적으로 중량물을 운반하지 않고,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작업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산업현장의 안전모보다 가벼운 경량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음
 - (안전근무복, 안전조끼) 형광 및 반사테이프가 부착된 근무복
 - (안전화) 사계절에 따른 방수, 방풍 및 투수성 및 미끄럼방지 효과가 있는 기능성 작업화
 - (절단방지장갑) 작업 시 절단·베임·찔림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장갑
 - (보안경) 종량제봉투 압축 회전판 작동시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상차작업시 이물질이 튀어도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안경
 - (방진마스크 등) 안전인증(2급 이상) 방진마스크 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식약처 인증(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 * 단, 호흡기질환자 등은 민감군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 후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조건

에 따른 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는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64호)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

③ 청소작업 안전수칙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함

※ 의왕시의 경우 '11년 주간근무로 전환한 이후 사고율 43% 감소

- 주간시간대 설정은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노사협의,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자체의 청소계획으로 결정함

< 주간작업으로 전환한 지자체별 주간작업 시간대 예시 >

지자체명	기존	개선
정선군	05:00~14:00	09:00~18:00
의왕시	02:00~10:00	06:00~15:00
정읍시	02:00~07:00	05:00~11:00

- 재래시장 등 기존에 야간작업 위주로 실시하던 청소구역을 주간작업시간대로 조정하되, 아침에 우선 청소될 수 있도록 청소일정과 작업구역 순서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대와 처리시설로의 운반거리 등을 감안,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을 결정하는 지자체는 현행 반입시간을 주간시간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처리시설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장기적으로는 환경미화원이 주간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
- 야간근무 중 수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

활용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가로 청소,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의 경우 작업시간 변경을 위한 노사협의, 주민과의 협조를 통해 주간근무로 업무시간을 우선 조정하여야 함

- 주간근무로 전환할 경우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 일부 상가지역 주차차량으로 인한 청소작업 불편 등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감안, 지자체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간근무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주민들이 협조하여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 종량제 봉투,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공사장 생활계 폐기물 등 수집·운반 작업(자동상차장치를 활용하지 않는 작업) 중에 미화원 1인이 들기 어렵거나 다음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작업은 3인 1조 이상(운전원 1, 상차원 2) 작업을 원칙으로 함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3호)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제8호내지 제10호 해당하는 작업

-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단,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3인 1조로 작업하기에 과하다고 판단되는 골목길 손수레, 가로청소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음식물쓰레기)을 이용한 작업 등에는 3인 1조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자체 및 대행업체는 고용노동부의 옥외작업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경미화원이 폭염·강추위, 폭설·폭우, 강풍,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어 작업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작업시간 단축 및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폭염 및 한파특보 발표기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기준 등은 고용노동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작업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가이드(2018. 9)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을 따름

□ 재활용품 운반차량의 덮개를 세워 적재하다가 환경미화원의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재함 덮개를 세워서 운반하여서는 아니됨

○ 재활용품 적재시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재활용품 전용수거차량, 적재높이가 낮은 소형차량 도입을 권고함

□ 도로 위 동물의 사체(로드킬), 낙하물 수거도중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통제인력, 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시등이 설치된 차량을 동원하여 수거하여야 함

○ 안전한 수거를 위해 도로 부분은 지자체 도로유지관리부서(도로관리사업소 등)에서 수거하고, 인도와 도로 변(빗물받이선)은 가로청소원이 맡아 수거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여 수거하는 방안을 권고함

□ 환경미화원이 작업시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을 준수하여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등 의무교육 실시하되, 안전보건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함

〈2〉 준수사항

① 지자체 준수사항

- ☐ 청소차량 신차 구입시에는 청소차량 안전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설치된 차량으로 구입하여야 하며, 기존 차량도 영상장치,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등을 설치하여 차량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함
- ☐ 대행업체의 안전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준수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 환경부는 지자체의 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안내하고 점검여부를 확인
- ☐ 대행업체가 안전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재계약시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최근 2년간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발생건수에 따른 감점 기준을 설정운영 하여야 함
- ☐ 지자체 직고용 환경미화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산업재해 기록 등) 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 청소대행 계약서에 청소차량의 안전기준, 보호장구 안전기준, 청소작업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하여야 함
- ☐ 소속된 환경미화원에게 안전기준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보호장구 구비시 환경미화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절단방지장갑, 방진마스크 등은 작업유형, 호흡질환 등 개인건강상태 등에 따라 오히려 청소작업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작업자 개인 의견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일반회계 재원 확대, 세외수입 인상 등 지역여건에 맞는 지자체별 재원 확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시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절단방지장갑 등 보호장구가 미화원 개인에게 충분히 지급되도록 하여야 함
- 환경미화원의 찢림, 베임 사고 등으로 인한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파상풍, 독감·폐렴구균의 예방접종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손소독제 및 소독제용품은 사업장, 차량내에 비치하여 미화원 개인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자체는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을 감안하여 사스 등 전염병 발생시 환경미화원에게 관내 보건소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이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함
-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규정(건강진단)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함

2] 청소대행업체 대표 준수사항

- 동 지침에 명시된 안전기준 및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청소차량 신차 구입시에는 청소차량 안전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설치된 차량으로 구입하여야 하며, 기존 차량도 영상장치,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등을 설치하여 차량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함

- ☐ 환경미화원에게 안전기준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보호장구 구비시 환경미화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 환경미화원의 찰림, 베임 사고 등으로 인한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파상풍, 독감·폐렴구균의 예방접종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손소독제 및 소독제용품은 사업장, 차량내에 비치하여 미화원 개인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규정(건강진단)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함
- ☐ 안전사고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산업재해 기록 등) 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함

☐ 3 환경미화원 준수사항

- ☐ 운전자의 부주의로 작업자가 덮개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자가 적재함 내부청소를 할 때에는 청소차량 운전자는 운전석에 탑승하여서는 아니됨
 - 청소차량 운전자가 적재함 덮개를 닫기 전 반드시 상차원이 끼일 위험은 없는지 위치 확인 후 작동하여야 함
- ☐ 청소차량 운전자는 작업인원이 매달리거나 적재함에 타고 있을 경우 운행하여서는 아니됨
- ☐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절단방지장갑 등 현장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

VI 행정 사항

- ☐ 지자체는 동 지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반영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정하고 개정내용을 환경부로 보고하여야 함
- ☐ 지자체는 환경미화원 작업관련 안전사고 사망시에는 사고원인, 개선 조치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규정에 따라 지자체와 대행업체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

* ①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 ☐ 지자체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을 위하여 취급위험 폐기물(깨진 유리 등) 등에 대한 올바른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내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함
- ☐ 시·도지사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 준수여부 등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미이행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조치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은 정부합동감사를 통하여 지자체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 준수여부 등 확인하여야 함

□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현황

- 최근 3년간('15~'17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1,822명 발생(사망 18명, 부상 1,804명)

(단위 : 명)

구분	재해자 수			사고 사망자수		
	전체	직영	위탁	전체	직영	위탁
계	1,822	824	998	18	2	16
'17년	584	238	346	4		4
'16년	641	293	348	6		6
'15년	597	293	304	8	2	6

□ 중대사고 사례

- (사례 1) 수거차량 적재함과 덮개 사이에 끼임



2000년 0월 △△매립장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의 적재함 잔여물을 삽으로 제거하는 작업 중 운전자가 덮개(파카)를 조작하여 하강하는 파카와 적재함 사이에 상체가 끼어 사망



2000년 0월 △△공단 △△사업소 내 폐기물 소각장에서 잔여물을 제거하던 중 운전자가 덮개(파카)를 조작하여 하강하는 파카와 적재함(폐기물박스) 사이에 끼어 사망



2000년 0월 △△△자원순환시설에서 적재함 커버(파카)에 끼여 있는 이물질들을 물 호스로 세척하던 중 운전자가 적재함 커버스위치를 조작하여 적재함과 적재함 커버 사이에 끼어 사망

○ (사례 2)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전석 상부에서 작업 중 떨어짐



2000년 0월 재활용품 수거업체 근로자가 차량을 정지한 상태에서 스티로폼을 고정하기 위해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 사고 형태별 유형

- 작업·이동 중 넘어짐(19%), 차량에서 떨어짐(18%), 쓰레기를 차량으로 올리는 중 어깨·허리 부상(15%), 교통사고(12%) 등 다수 발생

< 유형별 주요 사고형태 >

유 형	사고형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 청소차 적재함, 압축기계 등에 신체일부 끼임, 절단 ▶ 수거차량에 매달려 이동(발판 탑승) 중 떨어짐 ▶ 종량제 봉투 속 날카로운 물체에 베임 ▶ 종량물 수집·운반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가로 청소	▶ 눈·비로 미끄러운 노면에서 넘어짐 ▶ 오염물질 노출에 따른 질병 발생 ▶ 차량 추돌에 따른 교통사고
음식물 쓰레기	▶ 음식물 쓰레기통 상차 및 적재시 낙하, 리프트 끼임 ▶ 쓰레기통 등 종량물의 무리한 취급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한 액체로 인한 감염
재활용품	▶ 종량의 폐기물에 끼임 또는 부딪힘 ▶ 집게차로 들어 올린 폐기물에 부딪히거나 끼임 ▶ 재활용품 상차 후 부피를 줄이기 위해 누르는 작업 과정에서 차량에서 떨어지는 사고
대형폐기물	▶ 수거를 위해 대형폐기물을 부수는 과정에서 파편에 맞거나 찢림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발췌

□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찢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

□ 종량제봉투가 아닌 별도 분리배출 해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 깨어진 형광등 등 날카로운 폐기물은 신문지 등으로 포장 후 딱딱한 종이 또는 플라스틱 용기 등에 담아 위험성을 표시하여 배출
- 폭발 및 인화성 폐기물은 유해특성을 가급적 제거하여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한 후 투명한 비닐 등에 넣어 입구를 밀봉하여 폭발 및 인화성을 알리는 표시 후 배출
- 수은온도계, 수은혈압계 등 수은함유 폐기물은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한 후 투명한 비닐 등에 넣어 입구를 밀봉하여 배출
- 폐납산배터리는 전해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전도·낙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함이나 인근 차량 정비업체 등에 배출

1. 법적 근거없는 지침만으로 지자체 청소현장에서 안전지침
이행이 가능한지?

- 환경미화원 안전관리 규정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2018. 9월 법사위로 회부되어 계류된 상태임
- 법제화가 완료되면 법에 근거한 구속력이 있는 별도의 안전기준과 안전지침(고시 형태)으로 관리 예정
- 정식 법제화되기 전에 환경미화원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먼저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침으로 운영

2. 안전지침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미화원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추가 인력과 예산은 지자체에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 필요한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2018. 8. 8) 중 표준인력모델 마련 및 임금체계 개선 과제에 포함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협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임

< 청소차 안전장치 설치 관련 >

- 압축형 청소차량 1대당 비용은 240만원 소요되며, 설치기간은 7일 정도로 예상되며, 1개 지자체에 압축형 청소차 30대 운영시 7,200만 원 정도 소요 예상
- 노후차량 신차교체시 안전장치 구비토록 하고, 기존 차량은 지자체 예산반영 기간을 감안 가급적 2019년 연말까지 설치토록 충분한 도입 준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예정
- 2020년부터는 청소차량 안전기준 도입여부 현장점검 및 평가 예정



노동N이슈

제20호 | 2018.09.17.(월)

청소부 서씨 이야기
정식 권리에 대하여

구은희연구원(tokki79@incho.org)

이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한국노총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이 주의 시선>>

사라져 버린 ‘앉을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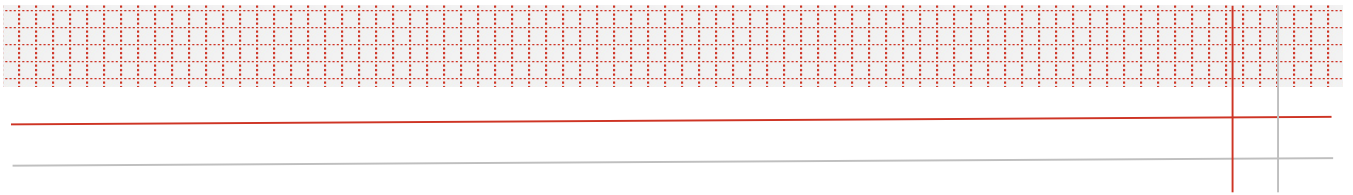
지난 주말 동네 대형마트를 찾았습니다. 추석선물을 둘러보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니다. 폭염과 호우로 장바구니 물가가 상승할 것이란 언론보도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선택 고르기 어려웠습니다.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건 또 있었습니다. 다리가 통통 뭉도록 하루 종일 일하는 서서 노동자들입니다.

지난 2008년 진행된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마트와 백화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고발하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자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제80조(의자의 비치)를 신설했습니다.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해당 조항은 노동자들의 앉을 권리를 사업주가 ‘의무’로서 보장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권고’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한때 마트나 백화점에 우후죽순 생겨나던 의자들이 소리 없이 사라져버린 이유입니다.

우리는 통상 임금이나 노동시간을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일하는 노동자에게 휴게는 몸과 마음의 휴식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노동조건입니다. 노동조합이 휴게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주 <노동N이슈>는 생활쓰레기 수집원 서광원씨의 고된 일상을 스케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서씨는 한 지자체로부터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위탁받은 ○○환경 소속 노동자이자 이 회사 노조 위원장입니다. 하지만 업체 사정이 영세한데다 노조활동 역시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일개 단위노조가 노동자 휴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실적인 해법은 서씨 같은 민간업체 노동자들이 지자체 소속이 되는 길입니다. 서씨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업의 3단계 전환 대상입니다. 지자체 소속이 되면 마음 편하게 지자체가 관리하는 휴게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 같은 상급단체가 노동자 휴게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서씨 같은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계 내부의 개혁이 요구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휴게공간이 없거나, 의자를 놓지 못해 서서 일하는 노동자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비롯해 백화점·마트 판매사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커피숍 점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방송스태프 같은 노동시장 내 약자들이 ‘쉴 권리’와 ‘앉을 권리’를 박탈당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 또는 영세업체 노동자입니다. 이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노동계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번주 <노동N이슈>는 노동자 휴게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8년 9월17일

노동N이슈



#. 저녁 8시. 청소부 서광원(55)씨의 하루가 시작됐다. 작업복 차림으로 현장을 향한다. 음식물이나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해 집하장에 부리는 것이 그의 임무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애처롭다. 땀뻑한 중국산 면으로 만들어진 싸구려 작업복은 하루에도 수십 번 청소차량을 오르내려야 하는 그에게 피로감을 더할 뿐이다. 스판키 짙짙한 기능성 작업복은 언감생심이다. 업무용 코팅장갑 한 켤레 더 내주는 것에도 별별 떠는 회사가 ‘땅개’들의 작업복 따위를 신경 쓸 리가 없다.

‘땅개’는 서씨 같은 생활쓰레기 수집원들이 스스로를 자조적으로 부르는 말이다. 그들만의 은어는 또 있다. ‘당첨’도 그 중 하나다. 악취가 진동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 투입구에 쏟아 붓다가 적재 한도를 넘기는 순간 일이 터진다. 압축됐던 오물이 사방으로 튀어 오르면서, 청소차량 뒤편무늬에 매달린 수집원들이 꿈쩍없이 쓰레기를 뒤집어쓴다. 당첨이다.

더럽고 냄새나는 작업복을 걸친 채 다시 일을 시작한다. 씻을 곳도, 옷을 갈아입을 장소도 없다. 회사는 온갖 세균으로

오염됐을 것이 뻔한 수집원들의 작업복을 세탁해주지 않는다. 집까지 입고 가서 가정용 세탁기로 돌려야 한다. 작업복의 수난은 끝이 없다. 겨울엔 뿌영게 날리는 연탄재 먼지를 뒤집어쓰고, 여름엔 땀에 젖어 쇠내가 난다.

휴게시간이 돌아왔다.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30분까지 근무하는데, 4시간마다 30분씩 쉴 수 있다. 국어사전은 ‘휴게’라는 말을 ‘어떤 일을 하다가 잠깐 동안 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쉬다’라는 말은 ‘피로를 풀려고 몸을 편안히 두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실도 이와 같을까.

서씨는 차갑고 딱딱한 아스팔트나 보도블록 위에 종이상자 하나 깔지 않고 누운 채 시간을 보낸다. 비라도 내리면 어찌냐고? 그냥 맞는다. 한겨울엔 목장갑을 낀 손이 얼어붙어서 잘 구부러지지 않는다. 그런 날엔 ‘일제시대 마루타 실험이 이런 것이었을까’하는 생각을 떠올려 본다.

배가 고프다. 일이 고되니 출근 전 밥을 챙겨먹고 나왔는데도 금세 배가 꺼진다. 이럴 땐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 하나로 허기를 달랜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도 틀렸다. 쓰레기 냄새

를 풍기면서 남의 영업장에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일도 걱정이다. 이 몸으로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한다. 죄인마냥 제일 구석자리에 몸을 구겨 넣는다.

일을 시작한지 어느덧 4년. 주6일 밤 근무의 삶은 그를 사회적 외톨이로 만들어버렸다. 낮 중심 세상을 사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마주칠 일이 줄어들었다. 지인들과 대화를 해본 지가 언제였는가.

이런 그에게도 유일하게 행복한 시간이 있다. 일주일 중 토요일 저녁시간은 그에게 허락된 유일한 ‘휴게시간’이다. 이때가 아니면 친구들과 소주잔 부딪힐 기회조차 없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쓰레기 얘기 아니면, 쓰레기 때문에 싸운 얘기밖에 할 말이 없다. 일상의 소소한 재미가 사라져버렸다. 자꾸 주눅이 든다. 그래서일까. 이제는 그가 먼저 사람들을 피한다. 생각이 꼬리를 물다보면 이런 생각도 든다. 이게 사람 사는 꼴인가. 나에게도 인권이란 게 있을까. 싸구려 작업복을 벗으며 다시금 비애에 잠기는 서씨다.

그의 노동에 ‘휴게 공간’이 있었더라면

<노동N이슈>가 생활쓰레기 수집원 서광원씨의 고된 일상을 스케치한 건 두 가지 이유에서다. 먼저 우리의 일상이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고에 빛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싶어서다.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일상에 녹아 있는 몇몇 키워드에 주목하기 위함이다. 작업복이나 오염·세탁·샤워·식사·수면·온도·소음·먼지 등이 그것이다. 이번주 <노동N이슈>는 노동자 휴게실에 관한 이야기다.

서씨의 사연이 더욱 안쓰럽게 느껴지는 건 그의 노동과정

에 ‘휴게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업무 도중 마음 편히 쉬고 씻고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됐더라면 그가 느끼는 비애의 상당 부분을 덜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통상 임금이나 노동시간을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일하는 노동자에게 휴게는 몸과 마음의 휴식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노동조건이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은 생산성과 창의성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동조합이 휴게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자.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노동자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보다시피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과 위반 시 처벌규정은 명확한데, 정작 휴게공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사업의 경우에 한정해 일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휴게실과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청업체에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나마 하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비

교적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규칙은 제79조(휴게시설)·제80조(의자의 비치)·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고열·한랭·다습 작업)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제80조(의자의 비치)를 살펴보자.

‘의자 놓기 캠페인’이 실패한 이유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조항은 지난 2008년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진행한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의 성과물이다. 캠페인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자 노동부가 조항을 신설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변한 건 없다. 이 조항은 노동자들의 앉을 권리를 사업주가 ‘의무’로서 보장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권고’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위반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다. 노동자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를 ‘휴게공간’이나 ‘휴게시설’로 본다면, 의자 설치를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때 마트나 백화점에 우후죽순 생겨나던 의자들이 소리 없이 사라져버린 이유다.

문제는 의자뿐만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다. 현행법상 사업주에게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법에 휴게공간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직종과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분진·소음·유

해물질·사고위험 등 휴식을 방해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노동자 휴게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이른바 ‘앉을 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사업주가 예방적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에 ‘장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자세로 근로해야 하는 경우’를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소위 쟁점법안에 밀려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2016년 5월 출범한 20대 국회는 지난 6월(전반기)까지 평균적으로 법률안 10건 가운데 3건(27.6%)도 처리하지 못했다. 본연의 책무인 입법 활동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계류된 법안이 1만건이 넘는다. 노동자 휴게 문제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도 사실상 최저임금법과 근로시간 관련법에만 매달렸다. 입법을 통한 노동자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 ‘휴게시설 가이드라인’ 이번엔 통할까?

사정이 이러니 정부가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마땅히 설 곳이 없어서 건물 화장실이나 길거리에서 숨을 돌리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노동부는 가이드라인에서 휴게시설 위치는 작업공간과 위험반경에서 분리된 작업장 내에, 작업공간에서 100미터 이내로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사업장이 넓을 경우 거점별로 휴게공간을 마련하거나 각 층마다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규모는 의자·탁자 등을 포함해 1제곱미

터, 최소 전체 면적은 6제곱미터를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휴게실에는 냉난방·환기시설과 소파 또는 등반이가 있는 의자, 탁자·냉장고·식수·화장지를 비치해야 한다. 지하실이나 기계실·화장실 등 환기가 되지 않는 공간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지양한다. 건설현장 같은 옥외사업장은 그늘막이나 선풍기·온풍기를 비롯한 냉·난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노동부는 일반 사업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백화점·면세점·청소·정비용역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태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생각해 보라. 더도 말고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정해진 대로 만든 휴게공간에서 청소부 서씨가 땀을 흘리고, 먼지와 오물로 얼룩진 옷을 갈아입고, 믹스커피 한 잔으로 피로를 털어내는 모습을. 어려운 문제도, 대단한 요구도 아니다. 노동하기 위해 휴식은 필수적이고, 노동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는 건 사업주의 의무다. 적절한 휴식을 위해선 휴게시간뿐만 아니라 휴게공간이 필요하므로 이를 제공하는 것 역시 사업주의 의무다.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그만인 시혜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번 가이드라인 역시 법적 근거가 미흡한 데다 처벌규정마저 없다는 점이다. 10년 전 의자 놓기 캠페인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전면적인 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해 휴게공간에 대한 사업주들의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ILO “적절한 온도와 습도, 환기와 조명 그리고 충분한 자리”

다른 나라들은 노동자 휴게공간에 대해 어떤 규정을 두고 있을까. 영국은 ‘작업장 보건안전복지 규정(The

Workplace(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92)’에 ‘휴게 및 식사를 위한 시설’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적절하고 충분한 휴식시설을 제공하고, 작업장 내 식사장소에서 오염되지 않은 식사가 가능한 적절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영국은 ‘건설 (설계 및 관리) 규정(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2015)’에도 휴게시설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다. 두 규정 모두 위반 시 2만파운드(한화 기준 2천93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독일은 ‘작업장령(ArbStättV)’에 ‘위생·휴게 및 대기실·구내식당·응급처치실 및 숙소’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1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안전이나 건강보호가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에게 휴게실 또는 적절한 휴게공간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작업시간 중 대기시간과 작업중단이 정기적으로 빈전하게 발생하는데 휴게실이 없다면, 대기시간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위반 시 600~5천유로(한화 기준 78~654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본은 ‘노동안전위생규칙(労働安全衛生規則)’에 관련 규정이 있다. 사업자는 노동자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강제성이 없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복지시설 권고사항(R102-Welfare Facilities Recommendation)’에서 “사업장의 여건과 상황으로 인해 휴게시설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업장에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권한을 국내법 및 규정을 통해 관계 당국에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추위나 더위로 인한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온·습도 △적절한 환기와

조명 △앉을 수 있는 충분한 자리를 최소한의 구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 권리’ 찾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은?

다시 청소부 서씨 얘기로 돌아가 보자. 서씨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서씨가 고용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는 인천광역시 중구와 민간위탁 계약을 맺고 있다. 업체 규모가 영세해 자체 휴게공간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결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영 미화원들을 위해 운영하는 거점별 휴게공간을 늘려서 서씨 같은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생활쓰레기 수거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해 봐도, 이 부분에 세금을 투여할 명분은 충분하다. 더욱 현실적인 해법은 서씨 같은 민간업체 노동자들이 지자체 소속이 되는 길이다. 서씨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업의 3단계 전환 대상이다. 지자체 소속이 되면 마음 편하게 지자체 휴게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동자 휴게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동시에 서씨 같은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조합 내부 개혁이 요구되는 대목도 있다. 휴게공간이 없거나, 의자를 놓지 못해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공과 민간의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비롯해 백화점·마트 판매사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커피숍 점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방송스태프 같은 노동약자들이 ‘실 권리’와 ‘앉을 권리’를 박탈당한 채 일하고 있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이거나 영세업체 노동자다. 이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노조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다. 문제는 그릇이다. 기존의 기업별노조 시스템으로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한국노총이 산업과 업종 중심으로의 조직형태 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의자^는 의자^{인데}
10년^째 앉^을 수 없^는 의자^는?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18.08.
- KBS, ‘앉을 권리법’ 10년간 방치…쟁점 법안만 관심있는 국회, 2018.07.17

MEMO

MEMO